
경 기 규 정



경 기 규 정

제정	2010. 01. 06.
개정	2019. 01. 31.
개정	2022. 03. 31.
개정	2024. 01. 23.

제1장 목적 및 사업

1. 1 (목 적)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양궁대회 및 본 협회가 승인하는 시도지부와 전국규모 연맹의 주최, 주관 양궁대회에 참가하는 양궁팀 임원(지도자 포함) 및 선수들의 건전하고 명량한 대회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양궁인(구성원 및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사 업)

1.2.1 본 협회는 국제양궁연맹(World Archery, 이하 WA) 헌장 및 규칙과 대한양궁협회(Korea Archery Association, 이하 KAA 또는 본 협회) 경기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채택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종목에서 연습하거나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대회와 지정행사 또는 본 협회 승인에 의한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 연맹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양궁대회를 통할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고,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대회)을 관장한다.<개정 2019.01.31>

1.2.2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및 협회가 승인한 전국규모의 양궁대회를 조직, 운영하며 WA 및 KAA 경기규정에 따라 대회를 개최한다.<개정 2019.01.31>

1.2.3 본 협회 경기규정에서 특별히 명시한 규정 외 해석상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WA 헌장 및 경기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1.31>

1.2.4 본 협회는 WA 헌장 및 규칙에 명시한 종목별 전국규모 양궁대회를 창설 개최할 수 있으며 대회별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1.2.4.1 대회별 별도 경기규정을 제정, 운영할 경우 해석상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 경기규정이 우선한다.

1.2.5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는 본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승인대회를 해당부와 종목별로 전국규모 양궁대회를 조직하여 개최할 수 있다.

1.2.5.1 본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 주최, 주관, 전국규모대회는 본 협회 경기규정을 준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1.2.5.2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 연맹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의 경기결과를 공인받기 위해서는 본 협회 경기감독관이 참관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6 본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양궁대회의 경기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실적 및 대회참가 결과를 관리하지 않는다.

1.2.6.1 본 협회가 승인한 전국규모대회는 당해 부별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자 격

2. 1 (참가자격)

2.1.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와 지정행사 또는 본 협회 승인에 의한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주최·주관 양궁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양궁팀의 선수 및 임원들은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2.1.2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지정행사의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임원 및 선수들은 본 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있는 규정 및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2.1.3 본 협회는 2.1.1과 2.1.2에 위배되거나 불이익하다고 판단, 인정되는 팀 및 선수, 임원들의 대회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2.1.3.1 대회참가 금지조치 사유발생 즉시 팀 및 개인에게 통보하고 금지조치를 통보받은 팀과 개인은 경기장에 머물 수 없으며 즉시 경기장을 떠나야한다.

2.1.3.2 대회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팀, 선수, 임원은 대회참가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본 협회 또는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 연맹체가 주최, 주관 혹은 조직하는 모든 자격자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1.4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는 동 대회 참가요강(규정)에 따른다.

2. 2 (시·도 및 산하 등록팀)

2.2.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 및 지정행사에 시도지부

또는 소속팀의 일원으로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선수는 소속팀의 재직, 재학 등의 합당한 자격(기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기 전 최소 정해진 선수등록규정에 따르지 않고서는 다른 팀의 선수로서 그 시도 및 팀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2.2.2 만일 선수가 다른 시도, 팀의 선수단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 선수는 새로운 팀에 경기 전 선수등록규정에 정한 서면허가서(이적동의서)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2.3 팀을 바꾸거나 새로운 팀 소속으로 등록한 선수는 새로운 팀을 대표하기 위해서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새로운 팀 소속으로 활동할 수 없다.

2. 3 (소속구분)

2.3.1 한 단체(팀)는 한 지역(시·도지부)에만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팀)의 소속이 불분명 할 경우 소재지 주소로 분리한다.

2.3.2 만일 그 단체가 1개 지역이상에 소재(실업 및 대학)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그 단체(팀)은 소속 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

2.3.3 그 단체가 다른 지역에 소속하고자 할 때는 그와 같은 변경이 공표되고 효력이 발효되는 당해 연도 선수등록기간 안에 이와 같은 통보를 시·도체육회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문서로 접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2.3.4 만일 특정지역의 팀 등록자격이 논쟁이 되었다면 본 협회는 관련지역이나 단체의 소명과 의견을 청취한 다음 해당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2. 4 (자격규약)

2.4.1 임원과 선수는 비폭력 페어플레이 정신을 존중, 경기장에서는 그에 따라 행동한다.

2.4.2 선수는 WA와 IOC, WADA 및 본 협회 규칙에서 금하는 물질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WA와 세계 반도핑 규약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개정 2019.01.31>

2.4.3 임원과 선수는 KAA 경기규정 및 WA 헌장 및 규칙과 WA 윤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1.31>

2.4.4 본 협회는 양궁경기의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는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어떤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2.4.5 선수는 자기자신, 자신의 이름, 사진 또는 성적이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본 협회 승인 하에 허용할 수 있으며, 상이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2.4.5.1 선수는 자기자신, 자신의 이름, 사진 또는 성적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KAA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2.4.5.2 선수는 본 협회 대회 및 지정행사동안 본 협회 스폰서 계약조건을 준수한다.

2.4.6 담배와 알코올 광고와 후원은 본 협회 모든 대회 및 지정행사에 금지된다.

2.4.7 선수는 물품에 부착된 정상적인 상표 외에 광고가 부착된 옷을 입을 수 있다. 제조업자의 상표는 그 품목을 생산한 회사의 등록표시이다. 어떤 회사가 계약 하에 물품을 만들었고 그 물품에 적합하다면 라벨이 상표에 해당한다.

2.4.8 선수는 물품의 정상적인 상표 외에 선수의 개인장비와 기술장비(예: 활,가방 등)

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2.4.8.1 2.4.7과 2.4.8에 언급된 모든 광고는 품목 당 400cm²를 초과해선 안 되며 선수 등록번호가 이것들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

2.4.8.2 2.4.7과 2.4.8에 언급된 모든 상표는 활과 안정기에 있는 상표를 제외하고 30c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2.4.9 2.4.6, 2.4.7, 2.4.8항에 의한 조항들은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팀, 임원들도 준수해야 한다.

2.4.10 상기 자격규약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위배하였을 경우, 대회참가자격을 박탈하거나 거부하는 등 임원 및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4.10.1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부 자격자라고 선언된 임원 및 선수는 부 자격자 기간 동안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자격자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 5 (의료규정)

2.5.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와 또는 본 협회 승인에 의한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가 주최, 주관, 통제하는 국내, 국외 양궁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WA,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가 정한 공인된 도핑검사, 혹은 다른 의료 테스트 및 검사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9.01.31>

2.5.1.1 의료규정에 의한 검사, 특히 도핑검사는 양궁선수로 활동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선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2.5.1.2 도핑테스트는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모든 양궁대회에서 불 특정 다수의 선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2.5.2 본 협회는 필요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여자선수들의 성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검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2.5.2.1 본 협회는 선수가 여자경기에 적합한 선수인지 선수 의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5.2.2 본 협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대회의 참가결과 몰수 및 모든 대회의 참가자격을 박탈하거나 거부하는 등 임원 및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5.3 본 협회의 도핑검사, 의료테스트 및 모든 확인검사를 불신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의료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5.3.1 재검사를 요청한 경우 일체의 재정적 경비는 재검사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2.5.4 본 협회 의료규정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며, 페어플레이, 올림픽 정신과 의료 업무에 내재된 도덕적 개념의 존중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장 대회조직 및 운영

3. 1 (대회조직)

3.1.1 대회장

3.1.1.1 회장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3.1.1.2 회장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불가항력적인 비상사태 발생 시 본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임시로 규칙 및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3.1.1.3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도록 부회장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임원을 파견할 수 있다.

3.1.1.4 본 협회 부회장은 부대회장으로 임명되며 회장 부재 시 대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3.1.2 임원장

3.1.2.1 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대회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가진다.

3.1.2.1 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회운영을 위한 임원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회운영 규칙적용과 실행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 ② 대회기간 동안 사용될 경기시설과 제반시설을 통제, 운영한다.
- ③ WA규칙 및 세칙과 본 협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검토한다.<개정 2019.01.31>
- ④ 티켓 추첨에 참석하여 감독하고 팀 대표자 회의를 준비하고 주재한다.
- ⑤ 대회 경기부장, 심판부장, 기록부장, 시설부장과 긴밀히 협력한다.
- ⑥ 대회의 특성과 필요한 변동에 대해 긴밀한 조정을 신속히 소집하고 처리한다.

3.1.3 경기부(발사통제부)

3.1.3.1 본 협회는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경기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3.1.3.2 경기부장은 부 통제관과 보조자를 임명하여 해당 임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3.1.3.3 경기부장은 부 통제관 및 보조자를 대회 개최 2주일 전에 임명한다.

3.1.3.4 경기부 임원은 경기일체의 다른 임무를 맡거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1.3.5 경기부장은 임원장, 심판부, 기록부, 시설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1.3.6 경기부(발사통제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회 개최계획에 의한 일정수립 및 조정.
- ② 개회식 및 시상식(폐회식) 행사를 운영하며 대표자회의를 주관, 진행한다.
- ③ 대회 개최기간 동안 일체의 발사시간을 조정, 통제한다.
- ④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필요한 합리적 대책과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⑤ 모든 경기일정 및 대회관련 아나운서 멘트를 방송, 안내한다.
- ⑥ 심판위원회와 협조하여 보도진의 취재활동을 조정, 통제한다.
- ⑦ 경기부장은 본 협회에 대회의 발사통제부 운영 결과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3.1.4 심판부(심판위원회)

3.1.4.1 본 협회는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심판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3.1.4.2 모든 국내대회에서의 심판활동은 대회 심판위원회에 의해 임명, 조정된다.

3.1.4.3 심판부장은 심판에 임명된 사실을 심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에 앞서 그 심판들의 심판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4 심판의 배치는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10개 표적받침대당 최소 1명의 심판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조정 배정할 수 있다.

3.1.4.5 시도양궁협회는 본 협회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 대동심판을 추천한다.

① 대동심판은 대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해야 한다.

② 대회심판은 중앙심판을 제외하고 한 시도에서 2인을 초과해서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초과배정을 허용할 수도 있다.

3.1.4.6 심판부장은 배정된 심판들을 관리, 감독하고 대회종료 후 심판운영 결과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3.1.4.7 심판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9.01.31>

3.1.4.8 심판들은 규정에 명시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① 규정집.

② 초시계.

③ 2M 줄자.

④ 호르라기(호각)

⑤ 간단한 쌍안경(필요시)

⑥ 확대경 : 돋보기 - 2~3인치 이상(직경 7.5Cm 이하)

⑦ 필기구(파란색, 빨간색) 및 심판노트

⑧ 경고카드(노란색, 빨간색)

⑨ 기타 필요장비

• 비옷이나 모자

•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간단한 가방 또는 허리가방

3.1.4.10 심판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① 심판은 경기규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② 심판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도록 공헌하는 조력자로서 위엄과 권위를 잃지 않아야 하며 정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③ 심판은 경기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선수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선수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배정된 표적의 선수와 불필요하거나 개인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3.1.4.11 심판은 심판임무 외 일체의 다른 임무를 맡거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1.4.9 심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7. 10 조 참조)

① WA 현장 및 규칙과 KAA 경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9.01.31>

- ② 경기장 경기거리, 시설물의 올바른 배치(표적지, 표적받침대) 등 시설을 점검한다.
- ③ 대회일정 중 선수의 장비 수시점검 및 발사행위와 득점기록의 시행을 통제한다.
- ④ 모든 분쟁과 항의를 처리하고 소청위원회에 이를 전달 및 발사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발사통제관과 협의하며 팀 대표로부터 제기된 불만, 요구사항에 대한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 (결정은 위원회 과반수 투표로 결정,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 ⑤ 필요시 발사통제관과 연락하여 날씨조건, 정전, 심각한 사건·사고로 인한 발사의 중단을 결정하고 가능한 당일 일정이 당일에 완료되도록 조치한다.
- ⑥ 임원과 선수의 발사행위 및 기록판정에 관련된 질의를 다루며 KAA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상식 전에 판정되어야 한다.
- ⑧ 선수와 임원이 KAA 경기규정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심판이 내린 결정이나 지도명령을 준수하도록 통제한다.

3.1.5 기록부

3.1.5.1 본 협회는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기록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3.1.5.2 기록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회 개최에 따른 모든 기록 관리와 대회기록 게시 및 배포를 하여야 한다.
- ② 기록보조요원(기록원) 관리 및 통제
- ③ 대회 단체전 엔트리 접수 및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대회 입상자 성적관리 및 시상준비를 하여야 한다.

3.1.5.3 기록부장은 본 협회에 대회의 기록부 운영 결과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3.1.5.4 기록임원은 기록임무 외 일체의 다른 임무를 맡거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1.6 시설부

3.1.6.1 본 협회는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시설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3.1.6.2 시설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회 개최에 따른 모든 시설물 소요량 파악 및 설치와 운영관리
- ② 시설요원 관리 및 통제

3.1.6.3 시설부장은 본 협회에 대회의 시설부 운영 결과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3.1.6.4 시설임원은 시설임무 외 일체의 다른 임무를 맡거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1.7 홍보부

3.1.7.1 본 협회는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홍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3.1.7.2 홍보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회 개최에 따른 모든 대회개요 및 참가현황 등 언론 뉴스매체 홍보물 배포.
- ② 대회결과 배포 및 언론매체 보도자료 배포

3.1.7.3 홍보부장은 본 협회에 대회의 홍보부 운영 결과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3.1.7.4 홍보임원은 홍보임무 외 일체의 다른 임무를 맡거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1.8 소청위원회

3.1.8.1 본 협회 소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3.1.8.2 본 협회 소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위원장 (부회장 1명)
- ② 위원 (약간인)
- ③ 필요시 전문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3.1.8.3 모든 소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팀 대표가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청인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단, 화살 득점가에 대한 소청은 할 수 없다.

3.1.8.4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 및 선의의 선수피해를 피하기 위해 경기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소청의사는 즉시 소청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관련경기의 상황종료 후 5분 내에 서면으로 표현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3.1.8.5 올림픽 라운드 매치게임에서의 소청이나 이의제기는 당일 관련경기 매치종료 5분 전까지, 혹은 다음매치 시작 전에 반드시 소청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1.8.6 1440라운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 랭킹라운드 등에서의 소청제기는 당일관련 경기 도중 또는 경기종료 후 5분전까지 서면으로 작성된 소청서가 소청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개정 2019.01.31>

3.1.8.7 소청을 접수한 소청위원회는 소청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소청인(팀)에게 다음단계의 시작 전까지 통보되어야 한다.

3.1.8.8 소청위원회는 공식연습일 포함, 대회기간 중 항상 경기장내에 있어야 하며 소청 접수 후 최대 5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1.8.9 소청위원회는 소청 관련자를 소환하고 질의할 수 있으며 진술내용을 요약하여 서면 작성하거나 또는 녹취할 수 있다.

3.1.8.10 소청위원회는 진술인의 진술내용의 진실여부를 재확인(서명 또는 육성확인)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술인의 녹취록을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3.1.8.11 소청위원회는 녹취내용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진술인의 소속, 이름, 직책
- ② 소청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소청내용 발생에 따른 현장상황 및 주변 관련자 또는 증인여부
- ④ 소청위원회 진술내용이 극히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

3.1.8.12 소청위원회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3. 2 (경기일정)

3.2.1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일정은 본 협회에서 일괄 확정한다.

3.2.2 본 협회는 각급 사업일정과 사업추진 장소에 따라 적절히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2.3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동 대회 경기일정에 따른다.

3.2.4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일정은 본 협회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3 (대회배정)

3.3.1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 개최 요구조건에 의거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는 단체장을 통해 본 협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3.2 대회유치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개최지역의 단체장이 서명한 대회유치 계획서

계획서에는 대회개최에 따른 모든 일반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본 협회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수, 팀 및 임원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종교적, 지역적, 또는 기타 이유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③ 본 협회 요구사항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부대시설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준수하겠다는 이행각서

④ 기타 본 협회가 대회 개최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협조의사

3.3.3 본 협회는 개최요건이 충족된 신청서 중에서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대회개최를 승인하고 모든 시도 양궁협회에 통보한다.

3.3.3.1 본 협회는 대회 유치를 위한 개최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대회를 임의 배정할 수 있다.

3.3.3.2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 의결확정 후 본 협회 사업 추진일정 및 개최지역 여건 변화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3.3.4 대회를 유치한 지역 및 단체는 대회를 개최하거나 책무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개최비용 지출에 책임이 있다.

3. 4 (대회 유인물 발간, 배포)

3.4.1 본 협회는 필요시 대회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

3.4.2 본 협회는 대회개최 관련 유인물에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대회개최요강, 대회일정, 참가신청서.

② 대회세부일정 및 운용시간, 의식, 행사,

③ 선수명단 및 표적 조 편성표가 포함된 프로그램

④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거리별 및 종합기록합계 경기결과

⑤ 개인 및 단체전 경기 각 단계별 경기 후에 배포되는 중간결과표

⑥ 대회 종료일 배포될 대회 우승자가 기재된 상세한 최종 경기결과 리스트.

⑦ 기타 대회관련 안내사항 및 긴급 고지사항 등

3. 5 (참가신청)

3.5.1 본 협회 선수 등록규정에 의거 등록된 모든 단체(팀)와 선수는 대회개최 부문에 따라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3.5.2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단체(개인)는 대회별

참가자격 요강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완성하여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5.2.1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

3.5.2.2 단체전 참가명단은 대표자회의 당일(공식연습 종료시)까지 교체가 허용되며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제출된 참가신청서에 의거 상위 3명(4명)을 엔트리로 임의처리 한다.

3.5.3 대회개최 공문에 명시된 마감일 이후는 참가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5.3.1 그러나 만약 지연사유가 해당단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것일 경우 본 협회는 그 참가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3.5.3.2 단, 추후신청 접수사실과 지연사유는 공식적인 충분한 설명으로 대표자 회의에 안내되어야 한다.

3.5.5 모든 선수와 임원들은 필요시 본 협회 및 WA, 대한체육회 등에서 요구하는 반도핑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 및 선수 또는 해당단체는 대회 출전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3.5.6 모든 대회에 단체전 참가선수 수는 4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대회의 참가요강에 따라 개인전 참가를 제한, 또는 허용할 수 있다.

3.5.7 단일 또는 혼성 단체(팀) 구성은 대회 개최요강에 따른다.

3.5.8 참가신청서 접수 마감 후 개인전 10명, 팀 3개 미만인 어떤 부문이나 부의 대회는 대회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5.9 각 예선전 경기에서 요구되는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 부전승이 허용된다.

3.5.9.1 부전승 경기는 개최하지 않는다. 만약 부전승 경기가 진행될 경우 수립된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전승한 선수, 단체는 다음 라운드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다.

3. 6 (지도자 확인)

3.6.1 본 협회는 대회참가신청에 따라 각 출전선수를 증명하거나 지도자 신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ID(AD)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3.6.1.1 본 협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은 해당 소속팀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경기장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6.1.2 본 협회가 발급한 등록증(ID-AD)은 경기장내에서 항상 패용하고 적절한 임원의 요구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소지하지 않을 경우 경기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6.2 유효한 등록카드 소지자만이 경기장내 관련지역에 출입이 허용된다.

3.6.3 본 협회에서 예외의 경우로 인정될 경우 임시카드(당일허용)를 발급할 수 있다.

3.6.4 총체적 대회운영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참가 선수를 제외한 모든 임원에 대하여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7 (타켓배정)

3.7.1 본 협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각 선수에게 고유 선수등록번호(백넘버)를 배정하고 프로그램에 인쇄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3.7.1.1 백넘버는 전 대회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3.7.2 선수들은 추천된 대로 다음과 같이 표적과 발사 위치를 배정 받는다.

① 1(A, B, C, D), 2(A, B, C, D), 3(A, B, C, D), 4, 5 마지막 표적까지

② 1(A, B, C), 2(A, B, C), 3(A, B, C), 4, 5 마지막 표적까지

3.7.3 본 협회에서는 동일소속 선수들이 서로 인접한 표적이나 발사그룹에 배정되도록 하기위해 추천된 순서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임의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팀 대표자 회의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3.7.4 표적, 편성조의 순서와 선수명단은 모든 대회임원, 심판, 참가선수와 임원들이 대회 대표자회의시에 볼 수 있게 작성된다.

3.7.5 부상,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선수가 불참하거나 포기, 또는 교체가 필요 할 경우 공식연습일(대표자 회의시) 까지 허용하되 이에 필요한 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등 본 협회의 요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6 공식연습 최대 10일전에 개최하는 표적추첨(타켓배정)은 팀 단장(팀 대표)과 선수 대표가 표적추첨에 참가할 수 있지만 표적추첨은 팀 단장만이 추첨에 참여한다.

3.7.6.1 팀 단장의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표성을 가진 임원(선수)이 참여한다.

3.7.6.2 표적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팀의 표적은 본 협회에서 임의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3.7.6.3 발사위치 추첨 시 특정팀이 불합리하게 추첨되었을 경우 본 협회는 임의로 다른 팀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 위내에서 발사 위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3.7.7 중계방송 또는 중요 대회 시 квалификации 라운드 또는 랭킹 라운드의 종료 후 선수들은 qualification 라운드 또는 랭킹라운드에서 얻은 위치에 따라 등 번호를 새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등 번호는 경기 종료 시까지 항상 부착하여야 한다.

3. 8 (득점기록)

3.8.1 본 협회는 모든 대회에 기록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표적 당 한 선수 이상이 배정되었을 경우 선수가 기록원이 될 수 있다.

단 선수로 참가하지 않은 기록원은 득점가에 관한 모든 판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3.8.2 기록원(선수가 아닌)은 본 협회 기록이사 또는 그 이상 되는 임원의 감독 하에 임무를 수행하며 이 임원은 득점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8.3 최고 득점자 8명의(표적번호, 이름, 소속명) 득점 누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전자속보판(수동속보판)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3.8.4 대회에서는 부별, 거리별, 라운드별 경기가 끝난 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경기결과가 경기장 내에 게시되도록 한다.

3.8.5 전자시스템일 경우, 수기로 기록된 기록지는 보관되고 기록은 공식득점이다.

3. 9 (팀 임원)

3.9.1 본 협회 각급 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그가 선수이든 아니든 한 사람의 팀 단장에 (또는 임원)의해 대표된다.

3.9.2 팀 단장은 대회참가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3.9.2.1 팀 단장은 본 협회가 주최 또는 소집하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3.9.2.2 장비검사에 팀과 동반하고 대회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팀을 대표한다.

3.9.2.3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본 협회에 팀의 선수를 대표해서 접촉할 수 있다.

3.9.3 팀 단장은 보조자나 코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구역 내에서의 팀별 총 인원 수는 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3.9.4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팀 임원들은 경기구역내에 출입할 수 없다.

심한경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장 밖으로 퇴출 받을 수도 있다.

3.9.5 대회의 매치플레이 라운드에서 한 선수 혹은 팀당 한명의 코치가 경기장에(FOP) 있을 수 있다. 코치는 반드시 경기장의 지정 장소에만 있어야 한다.

3. 10 (표적 위치 재배치)

3.10.1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심판들은 같은 팀에서 한 선수 이상이 한 표적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적 배치를 바꿀 수 있다.

3.10.2 예선전의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팀 선수 2명 이상이 한 표적에 배정되지 않는다.

3.10.3 매치게임 표적배정은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예선전) 결과의 순위에 따라 개인전 및 단체전의 WA 대진표 대로 배정된다.<개정 2019.01.31>

3.10.4 WA 대진표 대로 배정된 매치경기 대상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9.01.31>

3.10.5 기타 본 협회에서 대회불참에 따른 표적당 선수 부족등의 사유로 표적 재 배치를 승인할 경우 심판에 의해 임의로 사용표적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 11 (장비검사)

3.11.1 경기 개시일 바로 전날 경기장 또는 연습장근처에서 경기에 출전하여 선수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장비(예비장비, 액세서리 등)를 심판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3.11.2 검사 받는 팀(선수)은 ‘가나다’순으로 호명되고, 팀 대표가 대동해야 한다.<개정 2019.01.31>

3.11.3 심판은 본 협회 경기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선수는 해당 장비를 수정 또는 변경 후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1.4 심판이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해당장비 사용이 발견 되었을 경우 해당선수를 부정 장비 사용으로 간주하여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3.11.5 경기도중 부정장비(검사받지 않은)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선수가 획득한 모든 지위(해당 대회의 모든 경기결과:개인전 및 단체전))를 취소당할 수 있다.

3.11.6 장비 검사 시 임원 및 선수들은 팀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3. 12 (연 습)

3.12.1 대회에서 연습은 공식연습장이나 경기장의 허용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3.12.2 대회에서 연습은 квалификация 라운드 기간동안 최소 20분간 최대 45분간 한다. 그러나 모든 연습은 경기시작 15분전에 마쳐야 한다. 엘리미네이션과 파이널 라운드 발사시에 본 협회는 경기일의 일정을 고려하여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2.3 대회에 참가하는 팀(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기타 연습시설은 필요시 최소한 경기 시작 2일전에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3.12.4 개인전에서는 탈락했으나 단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 별도의 연습장을 제공할 수 있다.

3.12.5 선수들(팀)이 부전승이나 자격상실 매치 동안에도 연습장을 제공할 수 있다.

3.12.6 올림픽라운드 매치경기에서 연습장은 경기장 옆에 위치하여 엘리미네이션과 파이널 경기 동안에도 경기 중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다.

3.12.7 대회당일 워밍업 표적(선수 10명당 1개)은 필요시 경기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3.12.7.1 본 협회는 각 거리별로 본 협회가 허용한 공식연습을 허용하기 위해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3.12.7.2 연습장의 규모가 불충분한 경우 본 협회는 하루에 2-3 차례의 연습시간을 본 경기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

3.12.8 발사통제관은 공식연습장에 대해 발사중단, 발사재개 등에 통제를 알리는 청각 신호를 줘야한다.

3.12.9 발사통제관의 전자 및 청각신호에 의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그 연습시간대 내의 연습을 금지시킬 수 있다.

3.12.10 거리별 지정된 표적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사통제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13 (일정과 의전)

3.13.1 모든 대회일정과 의전은 본 협회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다.

3.13.2 공식적인 대회일정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팀 대표자 회의
- 장비검사
- 공식연습
- 개회식
- 경기일정
- 시상식
- 폐회식

이 모든 것은 본 협회의 경기운영 일정에 따라 조정,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

3. 14 (복장규정)

3.14.1 대회는 많은 귀빈과 외빈이 참석하는 주요행사이며 특히 개.폐회식과 시상식등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선수와 임원(팀 단장 등)은 의무적으로 소속단체의 유니폼이나

정장으로 예를 갖추어야 한다.

3.14.2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소속팀별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3.14.2.1 유니폼(경기복)은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팀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01.31>

3.14.2.2 여자 유니폼은 반팔과 긴팔, 라운드 티셔츠, 스커트, 짧은 반바지, 긴바지 등을 착용 할 수 있으며 민소매 티셔츠는 어깨선 끝까지 연결된 디자인은 허용된다.

3.14.2.3 남자 유니폼은 반팔과 긴팔, 라운드 티셔츠, 긴바지, 반바지 등을 착용할 수 있다.

3.14.2.4 같은 소속팀 선수들이 긴팔과 반팔 티셔츠를 혼용하여 착용시 동일한 색상의 유니폼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3.14.2.5 반바지(치마, 치마바지)는 양손을 내려 펴서 손가락 끝보다 길어야 한다.

3.14.2.6 큰 바지나 힙합스타일 반바지, 청바지 등은 착용할 수 없다.

3.14.3 모든 지도자는 선수와 같은 복장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3.14.3.1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시도대항 대회에서는 경기구역 출입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속팀(시도)명이 부착된 유니폼이나 단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14.3.2 경기구역(경기장 대기선 안쪽)을 출입하는 지도자는 해당대회에 해당팀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14.3.3 날씨(천재지변, 계절)관계에 따른 비옷, 방한복, 스웨터나 가디건 외투 등은 팀별 자율착용이 허용된다.

3.14.3.4 본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발급하는 AD카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3.14.4 모든 선수들은 유니폼에 소속팀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3.14.4.1 소속팀명은 상의뒷면 양쪽 견갑골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3.14.4.2 선수이름 부착은 소속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3.14.4.3 우천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부착된 소속팀명(이름)이 날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섬유재질을 이용하여 재봉질 또는 압착식(인쇄)으로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옷핀이나 임시적인 손바느질로 부착한 것은 심판에 의해 수정 또는 교체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심판지시 후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당할 수 있다.

3.14.4.4 햇빛반사를 유발하는 코팅재질이나 양면 접착제(종이)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3.14.4.5 유니폼 조끼착용시 소속팀명 탈.부착이 허용된다. 다만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 25CM X 세로 7CM 이상 크기의 섬유재질로 제작하여 사각을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3.14.4.6 비옷, 방한복, 스웨터, 외투, 가디건 등은 예외로 한다.

3.14.5 장비검사시 소속팀별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5.1 복장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회참가 및 경기구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14.5.2 올림픽라운드 개인전경기(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 참가하는 선수가 같은 소속으로 2명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3.14.5.3 올림픽라운드 개인전경기(엘리미네이션, 파이널라운드)에서 같은 소속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른 유니폼 착용이 허용된다.

3.14.6 슬리퍼와 슬리퍼형 샌들 종류를 경기장에서 착용할 수 없다.

3.14.6.1 운동화 및 모자는 팀별 자율착용을 허용한다.

3.14.7 경기자의 등번호는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보일 수 있도록 선수의 등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14.8 경기 중에는 자격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선수나 임원의 복장에 어떠한 광고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3. 15 (경기장 반입장비)

3.15.1 올림픽라운드 파이널 경기시 코치박스에는 다음 물품 휴대가 허용된다.

① 선수, 팀의 양궁 악세사리를 넣기 위한 허리띠 가방(힙백) 한 개.<개정 2019.01.31>

② 쌍안경 1개(스탠드형이 아닌)

③ 장비수리를 위한 장비박스

④ 초시계

⑤ 구급 의약품 통

3.15.2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는 다음의 장비물품 휴대를 허용한다.

① 활 2개(예비 활 포함).

② 한 개의 스코프와 삼각대.

③ 화살과 양궁 화살 통 한 개.

④ 경기를 위한 악세사리 등

3.15.3 다음의 물품은 파이널 라운드 경기장 코치박스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카메라.

② 비디오 카메라.

③ 핸드폰.

④ 오디오시스템 휴대용 기기(무전기 포함).

⑤ 기타 기계장치

제4장 경 기 운 영

4. 1 (종 목)

4.1.1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양궁경기는 WA 헌장 규칙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 실외 표적 라운드
- 실내 표적 라운드
- 필드 아처리 라운드
- 런 아처리 라운드
- 클라우트 아처리 라운드
- 플라이트 아처리
- 스키 아처리
- 3D 아처리

4.1.2 본 협회에서는 4.1.1 항에 명시한 종목 중 필요종목을 선택, 선별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종목을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2 (부 분)

4.2.1 본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별을 구분하고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승인한다.

- 남.여 초등학교 부
- 남.여 중학교 부
- 남.여 고등학교 부
- 남.여 대학교 부
- 남.여 실업일반 부
- 남.여 동호인 부

4.2.2 선수는 대회별로 한 부문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경기종목이나 선수가 사용하는 활의 종류에 따라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으로 구분한다.

4.2.3 선수는 선수등록규정에 명시한 바에 따라 부문을 선택하여야 한다.

4. 3 (라운드)

4.3.1 실외 표적 양궁 라운드

4.3.1.1 본 협회 실외 표적 양궁 라운드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4.3.1.2 본 협회 실외 표적 양궁 라운드는 아래의 거리 순으로 36발씩 발사된다.

- 여자부(고등학교, 대학교, 실업일반) : 70m, 60m, 50m, 30m
- 남자부(고등학교, 대학교, 실업일반) : 90m, 70m, 50m, 30m
- 남.여 중학교 부 : 60m, 50m, 40m, 30m
- 남.여 초등학교 부 : 35m, 30m, 25m, 20m
- 동호인부 : 동호인부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4.3.1.3 표적지는 90m, 70m, 60m에서 122cm 표적지, 50m, 40m에서 80cm 표적지, 30m에서는 80cm 복수 표적지를 사용한다.

4.3.1.4 초등학교부 35m, 30m, 25m 에서는 80cm 표적지를 사용하고 20m에서는 복수 표적지를 사용한다.

4.3.1.5 올림픽 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퀄리피케이션 라운드(Qualification Round)는 1440라운드 경기와 동일하다.<개정

2019.01.31>

- 엘리미네이션 라운드(Elimination Round)는 남녀 각각 상위 64명(128)의 선수들이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의 순위에 따라 배치된다.
- 이들은 그룹으로 일련의 매치를 발사하고, 각 매치는 4 엔드 3발 또는 2엔드 6발로

구성된다.

- 파이널 라운드(Finals Round) :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선발된 남녀 각각 상위 8명의 선수들이 70m 거리에서 122cm 표적에 3발 최대 5세트(세트시스템)를 발사하여 금메달 결정전에 이르게 된다. 모든 매치는 동시 또는 교대로 발사된다.<개정 2019.01.31>

선수들은 1발 당 20초 내에 한 번에 한발씩 동시 또는 교대로 발사한다.<개정 2019.01.31>

- 단체 엘리미네이션 라운드(Team Elimination Round) :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총점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선발된 남녀 각각 16개팀(1팀당 3~4명의 선수로 구성)이 동시에 매치를 실시한다. 각 매치는 6발 최대 4세트(세트시스템)로 구성된다(선수당 2발).<개정 2019.01.31>
- 단체 파이널 라운드(Team Finals Round)는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선발된 남녀 각각 상위 4팀이 일련의 매치를 실시한다. 6발 최대 4세트(세트시스템)로 구성된 각 매치를 통해 금메달 결정전에 이르게 된다. 타이밍은 선수가 1m 라인을 넘을 때 작동이 시작되고 정지된다.<개정 2019.01.31>

4.3.1.6 70m 라운드는 72발로 구성되며 70m에서 122cm 표적에 발사한다.<개정 2019.01.31>

4.3.2 기타 필요시 아래의 양궁경기를 개최할 경우 WA 헌장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1.31>

- 실내표적 라운드
- 필드 아처리 라운드
- 스키 아처리 라운드
- 클라우트 라운드
- 플라이트 슈트
- 3D 라운드
- 런 아처리 라운드.

4. 4 (대회의 공식승인)

4.4.1 다음 경기로 구성된 대회만이 본 협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4.4.2 본 협회 실외 표적 양궁 경기종목은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개정 2019.01.31>

- WA 실외 표적 라운드.
- WA 단체 실외 표적 라운드
- WA 더블 실외 표적 라운드.
- WA 더블 단체 실외 표적 라운드
- 70M 라운드
- 단체 70M 라운드
- 올림픽 라운드
- 단체 올림픽 라운드
- 중학교 60M. 50M. 40M. 30M 싱글 및 더블라운드
- 초등학교 35M. 30M. 25M. 20M 싱글 및 더블라운드

4.4.3 실내 표적 양궁 종목 및 기타 종목은 WA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1.31>

4.4.4 본 협회는 다음 목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위한 대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4.4.4.1 본 협회 주최, 주관대회

- 전국 남.여 종별 선수권대회
-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양궁대회
-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전국 남.여 대학일반 양궁대회
- 전국 남.여 종합선수권대회
- 올림픽제패기념 코리아 국제양궁대회
- 국가대표(리커브/컴파운드) 및 국가대표 상비군 등 각 급별 대표 선발전<개정 2019.01.31>

4.4.4.2 시도지부 및 산하 연맹체 대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고 양궁대회
-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회장기 양궁대회
- 대학연맹 선수권대회
- 실업연맹 선수권대회

4.4.4.3 대한체육회 주최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4.4.4.4 기타 관련단체 개최대회

-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 경상북도지사기 전국 초.중학교 양궁대회

4.4.5 본 협회에 경기결과를 공인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다음과 관련된 각 항목을 포함하여 본 협회 사무국에 대회 개최 1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① 대회명, 참가요강, 대회일정, 개최지의 명확한 지리적 표시, 심판배정표 등
- ② 본 협회에 대회등록 및 등록선수 참가여부
- ③ 공식 통고 및 또는 초청장

4.4.6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① 참가현황, 입상자 현황, 상장발급대장, 대회결과 종합리절트(남.여별, 부문별 구분된)
- ② 기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

4.4.7 4.4.5항에 의해 요청된 각 정보의 변경은 최소한 대회시작 10일전까지 본 협회에 변경요청 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4. 5 (경기 및 대회)

4.5.1 별도의 결과리스트와 시상 및 타이틀이 주어지는 시합을 경기(event)라 칭 한다

4.5.2 대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기로 구성되어 조직된 시합이다.

4.5.3 본 협회에 등록된 시.도 양궁협회 소속선수와 동호인 외 어떤 선수도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5장 타이틀과 기록

5. 1 (KAA 대회 타이틀)

5.1.1 리커브 경기의 실외 양궁대회

5.1.1.1 개인전 타이틀

- 초등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개인 우승자
- 중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개인 우승자
- 고등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개인 우승자
- 대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개인 우승자
- 일반/실업대회별 남자/여자 개인 우승자
- 동호인 대회별 남자/여자 개인 우승자

위 동호인부의 참가규모에 따라 개인전 타이틀을 변경할 수 있다.

5.1.1.2 단체전 타이틀

- 초등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단체 우승팀
- 중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단체 우승팀
- 고등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단체 우승팀
- 대학교 대회별 남자/여자 단체 우승팀
- 일반/실업대회별 남자/여자 단체 우승팀
- 동호인 대회별 남자/여자 단체 우승팀

위 동호인부의 참가단체 규모에 따라 단체전 타이틀을 변경할 수 있다

5.1.2 컴파운드 경기의 실외 양궁대회

5.1.2.1 컴파운드 경기의 타이틀은 5.1.1과 같다.

5.1.2.2 다만 참가규모 적정규모에 따라 부별 타이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합 타이틀로 적용할 수도 있다.

5.1.3 기타 양궁 경기종목의 대회개최는 WA 헌장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1.31>

5. 2 (신기록 정의)

5.2.1 신기록이란 기존 기록보다 최소한 1점 이상 더 높을 경우에 수립된다.

5.2.2 타이기록은 기존 기록과 같아야 하며 만점의 경우 10점(X) 수까지 같아야 타이기록으로 인정된다.<개정 2019.01.31>

5.2.2 실외 표적양궁대회에서 완벽한 만점이 나올 경우 신기록은 10점(X) 수를 포함하며 최소한 기존 기록보다 하나 이상의 X가 많아야 한다.<개정 2019.01.31>

5. 3 (한국기록)

5.3.1 실외표적양궁(리커브와 컴파운드 -남녀부)경기의 한국 신기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1.31>

- 개인 1440라운드 (144발)
- 개인 90m (36발). • 개인 70m (36발) • 개인 60m (36발).
- 개인 50m (36발). • 개인 30m (36발)
- 위 거리별 한국기록은 개인 1440라운드(144발)의 일부여야 한다.
- 개인 70m 라운드 (72발)
- 개인 올림픽 라운드 매치 (12발)
- 단체 1440라운드 (3×144발)
- 단체 70m 라운드 (3×72발)
-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 (24발)

5.3.2 실내 표적 양궁대회를 비롯한 기타 대회 신기록은 WA 헌장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1.31>

5.3.3 한국기록 대회

5.3.3.1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여 개최하는 정규대회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기록대회로 인정된다. 단, 본 협회 경기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5.3.3.2 국가대표 선발전 등과 같은 참가자격 제한 대회의 신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5.3.4 한국기록 공인

5.3.4.1 본 협회에서 승인한 모든 대회에서 수립된 한국기록은 기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본 협회에 기록지 원본을 포함하여 공인 신청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3.4.2 기록 공인은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협회에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5.3.4.3 기록 승인요청은 대회조직 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동 대회가 시도지부 및 전국 규모연맹체 주최/주관 하에 조직되었고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① 대회명, 장소, 일시, 대회개최요강, 참가규모, 타켓배정표 등
- ② 대회가 본 협회 경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확인
- ③ 한국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당해 연도 본 협회 등록선수 여부의 확인
- ④ 선수의 이름, 소속, 소속시도가 표시된 완전한 대회결과 리스트
- ⑤ 공인을 주장하는 기록의 명세서와 그것을 입증하는 원본 기록지

5.3.4.4 본 협회는 기록승인 요청 자료가 접수되는 즉시 10일 이내에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한국기록 공인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5.3.4.5 만일 같은 날짜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에 의해서 신기록이 동점으로 수립된 경우 그 선수들은 한국기록 공동보유자로 선언될 수 있다.

5.3.4.6 만일 서로 다른 날짜에 같은 신기록이 수립되었다면 신기록 수립을 발표하고 인정하지만 한국기록 보유자는 먼저 수립한 선수가 보유한다.

5. 4 (세계 신기록)

5.4.1 실외 표적양궁(리커부와 컴파운드 부문-남녀부)경기의 세계 신기록은 WA 헌장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1.31>

- 개인 1440라운드 (144발)
- 개인 90m (36발). • 개인 70m (36발) • 개인 60m (36발).
- 개인 50m (36발). • 개인 30m (36발)
- 위 거리별 세계기록은 개인 1440라운드(144발)의 일부여야 한다.
- 개인 70m 라운드 (72발)
- 개인 올림픽 라운드 매치 (12발)
- 단체 1440라운드 (3×144발)
- 단체 70m 라운드 (3×72발)
-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 (24발)

5.4.2 실내 표적 양궁대회를 비롯한 기타 대회 신기록은 WA 현장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1.31>

5.4.3 세계기록 승인대회

5.4.3.1 WA에 등록된 본 협회 전국대회들은 세계기록 대회로 인정될 수 있다.<개정 2019.01.31>

5.4.3.2 국가대표 선발전 등과 같이 참가자격 제한 대회의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5.4.3.3 WA에 등록된 본 협회 주최/주관 대회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9.01.31>

- ❶ 전국 남.여 양궁 종별선수권대회
- ❷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 ❸ 화랑기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
- ❹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전국 남.여 대학.실업 양궁대회
- ❺ 전국체육대회
- ❻ 전국 남.여 양궁 종합선수권대회

5.4.4 세계기록 공인

5.4.4.1 WA에 등록된 국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수립된 신기록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며 본 협회가 WA에 5.3.4.2, 5.3.4.3, 5.3.4.4항과 동일한 조건을 첨부하여 공인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발표된다.<개정 2019.01.31>

5.4.4.2 본 협회는 신기록 수립시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기록 공인요청을 한다.

5.4.4.3 만일 같은 날짜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에 의해서 세계기록이 동점으로 수립된 경우 그 선수들은 세계기록 공동보유자로 선언될 수 있다.

5.4.4.4 만일 동일대회 일정에서 다른 날짜에 같은 신기록이 수립되었다면 신기록 수립을 발표하고 인정되지만 세계기록 보유자는 먼저 수립한 선수가 보유한다.

제6장 메달. 트로피. 상장

6. 1 (메 달)

6.1.1 1440 라운드 각 경기별 1위, 2위, 3위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1.1 1440 라운드 개인종합 기록합계 상위자 3명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1.2 1440 라운드 단체종합 기록합계 상위 3팀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1.3 1440 라운드 각 거리별(4거리) 기록상위자 3명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1.4 거리별 메달은 1위를 기준으로 각각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점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1위 동점자가 3명 이상일 경우 2위와 3위 시상은 하지 않는다.
- ② 1위 동점자가 2명일 경우 2위 시상은 없으며 3위를 시상한다.
- ③ 1위가 1명, 2위가 2명 이상일 경우 3위 시상은 하지 않는다.
- ④ 1위가 1명, 2위가 1명일 경우 3위 동점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시상한다.

6.1.2 WA 올림픽 라운드 각 경기별 1위, 2위, 3위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2.1 WA 올림픽라운드 개인전 파이널 라운드 1위, 2위, 3위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2.2 WA 올림픽라운드 단체전 파이널 라운드 1위, 2위, 3위 팀에게 메달이 수여된다.<개정 2019.01.31>

6.1.2.3 WA квалификация 라운드에 포함된 각 거리별 기록상위자 3명에게 메달이 수여되며 6.1.1.4항과 같다.<개정 2019.01.31>

6.1.2.4 WA 올림픽라운드 개인 및 단체전(혼성전 포함) 토너먼트 경기 시 3-4위 결정을 위한 순위 결정전을 별도 시행하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공동 3위로 시상할 수 있다. 단,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은 체육회 승인 하에 가능하다. <신설 2019.01.31>

6.1.3 초등학교부는 KAA 싱글라운드 기록합계에 의한 개인종합, 단체종합 기록순위와 각 거리별 기록 순으로 각각 1위, 2위, 3위에게 수여된다.(6.1.1.4항 참조)

6.1.4 각 부별 단체전 메달은 한 팀당 4명을 기준으로 수여된다.

6.1.5 메달은 각 대회에 따라 별도의 디자인으로 제작되며 금색, 은색, 동색으로 구분되고 대회명, 장소, 연도가 표시된다.

6. 2 (상장과 트로피)

6.2.1 트로피는 각 부별 개인전, 단체전 경기에 따라 6.1과 같이 수여된다.

6.2.2 상장은 각 부별 개인전, 단체전 각 거리에 따라 6.1과 같이 수여된다.

6. 3 본 협회는 각 부별 대회에 참가한 개인이나 팀에게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별도의 재량으로 특별상을 마련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실외표적 양궁 경기규정

7. 1 (경기장 배치)

7.1.1 양궁 경기장 배치(구획)는 WA 헌장 및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본 협회 국내 대회의 경기장은 KAA 경기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남북방향 $\pm 20^\circ$ 오차와 직사각형 설계의 원칙은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1.31>

7.1.1.1 각 경기거리는 각 표적의 노란원에서 수직으로 지면에 내린 지점부터 발사선까지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

7.1.1.2 경기장 각 거리별 구획(설계) 허용오차는 90m, 70m, 60m에서 $\pm 30\text{cm}$ 이고, 50m, 40m, 35m, 30m, 25m, 20m의 경우 $\pm 15\text{cm}$ 이다.

7.1.2 선수 대기선 위치는 발사선에서 최소 5m 뒤에 구획되어야 한다.

7.1.3 한 부문의 모든 선수들은 동일 경기장 내에 수용되며 경기장의 여자경기 구역과 남자 경기구역은 최소 5m폭의 분명한 구분선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올림픽 라운드에서의 중앙 분리선은 약 10m 이상 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1.4 한 개의 표적 당 3명 이상의 선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되 경기장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표적 받침대당 최대 4명의 선수까지 허용할 수 있다.

7.1.4.1 각 표적받침대는 수직에서 약 $10\sim 15^\circ$ 각도로 세워져야 하며 표적은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동일 경기장내의 모든 표적받침대의 각도는 동일하게 세워진다.

7.1.4.2 경기장내의 모든 표적지 중심("x")은 항상 같은 높이에 부착되도록 한다.

7.1.5 표적 받침대 선에서 발사선까지 직각으로 연장된 레인을 구획하고 1, 2개 또는 3개의 표적받침대를 1개 레인 안에 배치한다.

7.1.5.1 각 표적 받침대와 발사선상의 지점이 표시되고 그 표적 받침대와 같은 발사선 번호판을 발사선 앞 1~2M 사이에 고정 배치한다.

7.1.5.2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같은 표적받침대에 발사한다면 발사 위치를 발사선에 표시하고 한 선수 당 최소 90cm의 공간을 보장한다.

7.1.5.3 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 경우 추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7.1.6 발사선 앞 3m 지점에 별도의 라인이 표시된다.

7.1.7 올림픽라운드에서 2명이 한 개의 표적을 사용하도록 구획할 수 있으며 표적받침대들은 두 개씩 나란히 배열하거나 구분선 양쪽으로 배열하여 운영할 수 있다.

7.1.7.1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와 파이널라운드 동안 경기 중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경기장 가까이에 연습장이 마련된다.

7.1.7.2 단체전에서는 발사선 1m 뒤에 최소 3cm 폭의 분명하게 보이는 선을 표시한다.

7.1.7.3 단체전에서는 1미터라인 뒤에 표시된 선수박스과 코치박스를 설치한다.

7.1.8 표적받침대 후면 및 양 옆에 선수들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7. 2 (경기장 설비)

7.2.1 표적지

7.2.1.1 KAA 대회에 사용하는 실외 표적지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① 122cm 표적지 : 지름이 122cm
- ② 80cm 표적지 : 지름이 80cm
- ③ 80cm 중앙 표적지(득점구역이 6점 ~ 10점까지 있는 복수표적지 장치용)

7.2.1.2 표적지는 KAA 또는 WA에 의해 공인된 표적지만 사용된다.<개정 2019.01.31>

7.2.1.3 표적지 설명

- ① 122cm와 80cm 표적지들은 정 중앙 “x”로부터 바깥쪽으로 황색(노랑), 적색(빨강), 청색(파랑), 흑색(검정), 백색(흰색)의 5개 동심원으로 나뉘어지며 청색과 흑색, 흑색과 백색 사이에는 분리선이 없다.
- ② 각 색깔은 얇은 선(2mm)에 의해 같은 폭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노란색의 정 중앙부터 같은 넓이로 10개 득점구역으로 구분된다.
(122cm 표적지일 경우는 6.1cm, 80cm 표적지일 경우에는 4cm)
- ③ 분리선들은 각각 더 높은 득점구역 내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백색구역의 마지막 가장자리 선도 득점구역 내에 표시된다. 122cm 표적지나 80cm 표적지의 모든 분리선은 2mm를 넘지 못한다.
- ④ “핀홀”로 불리는 표적지 중심은 폭 1mm, 길이 4mm를 초과하지 않는 작은 “x”로 표시된다.
- ⑤ 10점 구역의 “X10”은 동점일 경우 랭킹순위 및 신기록 구분을 위해 필요하다.
- ⑥ 80cm 중앙 표적지(복수표적)는 30m, 25m, 20m 거리의 본 협회와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⑦ 80cm 중앙 표적지는 FITA 80cm 표적지와 같은 크기로 구획되어 가장 낮은 득점구역은 청색인 6점이다.

7.2.1.4 득점가와 색상표

득점가	10	9	8	7	6	5	4	3	2	1
색상	황색	황색	적색	적색	청색	청색	흑색	흑색	백색	백색
구분	107U	107U	032U	032U	306U	306U	프로세스 블랙	프로세스 블랙	-	-

7.2.1.5 측정 허용오차

표적지는 각 10개 구역, 원의 지름을 관통하여 측정되고 측정된 각 지름의 허용오차는 10, 9, 8점 구역은 “±1mm” 이내, 다른 득점 구역에서는 “±2mm” 이내이다.

구역	X10	10	9	8	7	6	5	4	3	2	1
122CM	6.1	12.2	24.4	36.6	48.8	61	73.2	85.4	97.6	109.8	122
80CM	4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허용오차	1	1	1	1	2	2	2	2	2	2	2

7.2.1.6 거리별 표적지 크기

구분	90	70	60	50	40	35	30	25	20	비고
실업.일반부 대학.고등부	122Cm	122Cm	122Cm	80Cm			복수 표적			
중학교 부			122cm	80Cm	80Cm		복수 표적			
초등학교						80Cm	80Cm	복수 표적	복수 표적	
동호인 부	122Cm	122Cm	122Cm	80Cm			복수 표적			

- ① 표적지의 노란색 중심(“x”)은 ±5cm 범위 내에서 지상 130cm 높이에 부착한다.
- ② 30m, 25m, 20m에서 삼각복수표적지를 사용할 때는 3개의 중심에 있는 표적지 중앙 혹은 표적을 위쪽1, 아래쪽 2개로 나누는 선이 지상에서 130cm(±5cm)에 위치한다.
- ③ 30m, 25m, 20m에서 중심이 4개인 복수표적지를 사용할 경우 위쪽 표적지 중심은 바닥에서 162cm 위에 위치하고 아래쪽 표적 중심은 최소 100cm위에 위치한다.
같은 높이에 있는 2개 표적사이의 최소거리는 10cm이다.
각각의 표적은 표적받침대의 1/4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④ 30m, 25m, 20m에서 2개 또는 3개인 복수 표적지를 사용할 경우 두 표적의 중심은 지상에서 130cm(±5cm)에 위치할 수 있다. 두 표적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cm이다.

7.2.1.7 표적지 재료

표적지는 종이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 같은 경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표적지는 색과 재질이 같도록 해야 한다.

7.2.2 표적 받침판

7.2.2.1 원형 또는 사각형 표적받침판은 어떤 방향에서도 124cm 이상이어야 한다.

7.2.2.2 표적받침대는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고 화살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7.2.2.3 각 표적받침대는 하나의 고유 표적번호를 부여한다.

7.2.2.4 번호판은 30cm 크기로 노란바탕에 검정글씨와 검정 바탕에 노란 글씨를 번갈아 설치하여야 한다.(예: 1번이 노란 바탕에 검정글씨이면 2번은 검정바탕에 노란 글씨)

7.2.2.5 표적번호는 각 표적받침대의 중앙 맨 위쪽이나 맨 아래쪽 좌.우에 고정시킨다.

7.2.3 발사시간 통제장치(청각 및 시각 장치)

7.2.3.1 발사통제관은 다음을 통제한다. (7. 8. 발사통제와 안전-참조)

- ① 호각이나 기타 청각 신호장치로 각 시간제한의 시작과 종료를 통제.
- ② 위 언급한 청각신호 외에 디지털시계, 신호등, 깃발, 신호판 및 또는 기타 단순한 장치 등으로 각 시간제한을 통제.

7.2.3.2 청각신호와 시각신호 통제장치 사이의 불일치는 청각시간 통제장치가 우선한다.

7.2.3.3 신호등은 위로부터 빨강, 노랑, 녹색 순이다. 신호등들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두 개의 다른 색깔이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7.2.3.4 디지털시계

- ① 디지털시계로 시간을 통제할 때 시계의 숫자가 100M 거리에서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충분한 크기(최소 20cm 높이)로 준비하여야 한다.
- ② 시계는 필요한 경우 즉시 멈추고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③ 디지털시계가 사용될 경우 신호등은 보조적 기능이며 두 가지 시스템이 사용될 경우 이들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한다.
- ④ 두가지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시계가 우선한다.
- ⑤ 시각신호 장치는 경기장 각 면의 발사선 앞 30m 이내의 구분선에 설치해 모든 선수가 장치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 ⑥ 매치플레이 표시기로 교대매치 플레이시 누가 발사할 차례인지를 표시해 주는 별도의 녹색등 / 적색등, 카운트다운 시계나 기타 유용한 시각신호가 있을 수 있다.

7.2.3.5 비상용 장비

- ① 시간통제 장치가 전자장비로 운용될 때는 전자시스템 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에 대비하여 신호판, 깃발 또는 기타 간단한 수동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 ② 시간통제가 신호판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통제될 경우 신호판의 크기는 120×80cm 보다 커야하며,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느 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쉽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
- ③ 신호판의 한쪽 면은 20~25cm 폭의 검정 줄과 노란 줄을 번갈아 표시한다. 줄은 지면에서 45° 경사가 져야 하며 반대쪽 면은 전부 노란색이어야 한다.

7.2.4 기타 장비

본 협회 또는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 주최, 주관대회는 기타장비 세척에서 강조된 장비사용을 권장하거나 설치하여 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7.2.4.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의 백넘버 부착은 의무적이다.

7.2.4.2 발사순서 표시기는 ABC, CAB, BCA 또는 AB/CE, CE/AB 등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선수들은 동시에 발사함에 따라 글자는 발사지점에서 선수들이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크고, 2개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7.2.4.3 대형 속보판은 최소 남. 여 상위 8명의 기록이 각 라운드 종료 후에 합계점수를 표시하고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커트라인 점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9.01.31>

7.2.4.4 속보판은 각 라운드 후에 모든 선수들의 결과 표시를 위해 설치한다.<개정

2019.01.31>

7.2.4.5 올림픽 라운드의 개인전 엘리미네이션과 파이널 라운드에서 선수의 등번호나, 단체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속팀을 나타내는 명패가 최소 25cm 높이의 문자나 숫자로 각 표적받침대의 득점 기록장치 옆에 설치될 수 있다.

7.2.4.6 올림픽 라운드의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경기결과를 나타내는 수동점수판은 각 표적받침대 아래 설치할 수 있고 숫자의 높이는 최소 25cm이다.<개정 2019.01.31>

7.2.4.7 올림픽 라운드의 파이널라운드에서는 각 세트별 세트점수 합계를 표시하는 기록판이 각 선수(팀)당 하나씩 각 표적받침대에 설치될 수 있다. 선수의 이름과 소속명을 위한 설비도 갖추 수 있다.<개정 2019.01.31>

7.2.4.8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블라인드가 표적받침대 근처에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심판, 기록원, 선수 대리인이 사용한다.

7.2.4.9 발사선 앞이나 표적받침대 뒷편의 깃발 등의 적절한 장비로 심판이나 기록원을 부를 수 있다.

7.2.4.10 풍향 깃발은 모든 KAA 대회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풍향 깃발은 가벼운 재질에 눈에 잘 띄는 색깔(노란색 같은)로 만들어야 하며 표적번호 40cm 위쪽, 혹은 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한 깃발은 25~30cm 크기이다.

7.2.4.11 발사통제부(경기부)를 위한 별도의 공간 시설물 설치하여야 한다.

확성장비(임원간의 의사소통, 경기진행을 위한 통제 등)와 대규모 대회에서는 임원들에게 야외 전화나 워키토키 같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7.2.4.12 선수, 팀 단장, 코치, 및 임원들을 위해 대기선 뒤쪽에 충분한 수의 의자나 탁자가 준비된다. 심판의자는 선수 대기구역선 안쪽(표적방향) 적절한 곳에 위치한다.

7.2.4.13 장비 이상이나 화살이 되 튀어나왔을 경우, 표적받침대의 문제 등 대회지연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는 발사통제관이 적절한 신호를 경기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7.2.4.14 선수이름 및 또는 표적번호(1A, 1B, 1C 또는 단순히 A, B, C, 선수가 표적받침대당 4명일 경우에는 D 추가)가 기입된 득점판이나 그러한 종류의 장치는 각 세트 종료 후 누적점수를 표시하기 위한 명패와 수동점수판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한 장치가 사용될 때는 지면 위 각 표적받침대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바람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득점판은 화살의 득점가가 기록되고 화살을 뽑은 후 선수가 표적받침대를 떠나기 전에 조작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7.2.4.15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자동 득점기록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7.2.4.16 표적정면 중앙 또는 발사선 앞에 TV 카메라나 이동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7.2.4.17 대회 홍보 및 중계방송 등의 특별한 경우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필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7. 3 (선수장비)

KAA 경기규정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선수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규정에 위반된

장비사용이 발각된 선수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KAA 규정에 정의하지 않은 규정은 WA 현장 및 규칙을 준용, 적용한다.<개정 2019.01.31>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비는 기본적 규정 외 국산 및 저가장비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한 별도규정을 적용한다.

7.3.1 리커브 부문

7.3.1.1 활(bow)은 어떤 유형의 활이든지 그것이 표적경기에 사용되는 활이란 개념과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 ① 한 개의 몸체(Handle riser)와 양끝에 스트링 노크(stringnock)가 달린 팁(tip)이 장착된 탄력 있는 두 개의 날개(limb)로 이루어진 활.
- ② 활은 양끝 스트링 노크 사이에 1개의 현(string)을 걸어 한손으로 손잡이(grip)를 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현을 당겼다가(draw) 놓음(release)으로써 발사하게 되는 것이다.
- ③ 다양한 색의 핸들과 윗 날개 안쪽의 상표는 허용된다.

7.3.1.2 활의 현(bow string)은 적당한 재료로 만들어 다양한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현에는 당기는 손가락을 걸 수 있는 센터 써빙(center serving), 필요시 화살 노크를 고정시키기 위한 써빙이 추가된 노킹 포인트(nocking point), 이 포인트를 가리키기 위한 두개의 노크 로케이터(nocklocator)가 있다.
- ② 현에 부가적으로 입술이나 코의 표시(mark)로서 사용되는 부착물이 허용된다.
- ③ 현의 써빙은 활을 완전히 당겼을때 선수의 시야에 보여서는 안 된다.
- ④ 활의 현은 핏홀(peep-hole), 마킹(marking) 또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 조준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7.3.1.3 조정 가능한 애로우 레스트(arrow rest)

- ① 이동 가능한 프레셔 버튼(pressure button), 프레셔 포인트(pressure point) 또는 애로우 플레이트(arrow plate)는 전기식과 전자식이 아니고 조준시 별도의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사용이 허용된다.
- ② 프레셔 포인트는 활 핸들의 피봇 포인트(pivot point)로부터 4cm 이상 뒤쪽(안쪽)으로 나오지 않는다.
- ③ 전기, 전자식이 아닌 청각 및 또는 시각 드로우 확인장치(draw check device)가 사용 가능하다.

7.3.1.4 조준을 위한 하나의 조준기(bow sight)가 허용이 된다.

- ① 조준기는 프리즘이나 렌즈, 기타 확대장치등과 한개 이상의 조준점을 위한 수평장치 전기식 또는 전자식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조준기에 터널, 튜브, 사이트 핀 또는 기타 상응하는 연장 구성요소가 시야선상에 전체 길이가 2cm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③ 조준을 목적으로 활에 부착된 조준기는 조준 각을 고정시키고 바람에 의한 화살의 편류 조정을 위해서 허용될 수 있다.
- ④ 조준기 연장장치(sight extension)와 거리표시가 된 판이나 테이프를 활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어느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섬유질 시각 사이트 핀(fiber optic sight pin)을 조준점(sight point)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착물이나 끝 부분이 풀 드로우 시 선수의 시야 선에 있지 않다면 섬유질 시각 사이트 핀의 전체 길이는 2cm를 초과할 수 없다.

7.3.1.5 안정기(stabilizer)와 불량운동 보정장치(torque flight compensator)는 허용된다.

- ① 안정기는 활 이외에 어느 것에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 ② 발사선상에서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7.3.1.6 화살은 어떤 유형이든지 표적경기에 사용되는 화살이라는 개념과 원리에 부합되고 표적지나 표적받침대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다.

- ① 화살은 포인트(point)가 달린 샤프트(shaft)와 노크(nock), 깃(fletching)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화살 식별표시(크레스팅:crestring)를 할 수 있다.
- ② 샤프트의 최대지름은 9.3mm, 포인트의 최대지름은 9.4mm까지 허용된다.
- ③ 샤프트에는 선수의 이름이나 머리글자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엔드별 사용되는 깃과 노크, 있다면 크레스트 라인까지 모든 모양과 색깔이 같아야 한다.

7.3.1.7 핑거탭(손가락 보호용구-finger protection)은 어떤 형태이든 현을 끌어당기고 지탱하여 놓기 위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 ① 화살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가락 사이에 분리기구(separator)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앵커 링을 목적으로 핑거탭에 앵커 판이나 그와 유사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③ 활을 잡는 손에는 일반장갑, 병어리장갑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립(grip)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7.3.1.8 점수 확인을 위한 쌍안경, 망원경, 기타 시각 보조기구가 사용될 수 있다.

- ① 발사선상에서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 코치박스에 있는 코치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쌍안경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처방을 받은 안경, 경기용 안경 및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있으나 마이크로 홀 렌즈나 그 유사장치를 부착할 수 없으며 조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도 할 수 없다.
- ③ 조준을 하지 않는 쪽 눈의 안경은 완전히 가리거나 안대를 사용할 수 있다.

7.3.1.9 기타 허용되는 부속품(accessories)

- 팔 보호대(bracer, armguard)
- 가슴 보호대(dress shield)
- 보우슬링(bow sling)
- 벨트, 또는 지면에 세워 놓을 수 있는 전통(ground quiver)
- 지면에서 1cm이상 돌출되지 않는 발 위치 표시기
- 림 세이버(limb saver)
- 쌍안경이나 망원경 등을 위한 삼각대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범위안에서 발사선에 남겨둘 수 있다.
- 풍향지시기는 가벼운 리본, 끈 같은 것을 장비에 부착하여 사용을 허용되나 전기식이나 전자식은 허용이 안 되며 발사선 뒤에서는 전자식 풍향지시기가 사용될 수 있다

7.3.1.10 본 경기규정에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WA 헌장과 규칙내용을 우선 준용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장비사용에 대한 규정은 특별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한다.<개정 2019.01.31>

7.3.2 컴파운드 장비는 KAA 경기규정에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WA 헌장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식이나 전자식이 아니라면 모든 유형의 추가 장비가 허용된다.<개정 2019.01.31>

7.3.2.1 컴파운드 보우는 슛-스루 형이 가능하며 드로우는 편심 도르래 및 캠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기계적 장치가 가능하다. 활은 끝에 현을 걸어 활을 팽팽히 만들거나 케이블을 부착할 수 있다. 특별하게 디자인된 케이블도 부착할 수 있다.

- ① 피크 웨이트는 60파운드를 초과해선 안 되며 케이블 가드가 허용된다.
- ② 선수의 손, 손목, 혹은 보우암에 고정되지 않은 스플트 케이블(spilt cable)과 보호대는 허용된다.

7.3.2.2 현은 목적에 맞게 적당한 재료로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것으로 여러가지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 현에는 당기는 손가락이나 릴리스 보조장비를 놓을 센터써빙이 있다. 노킹 포인트가 고정되어 필요시 화살 노크를 고정시키기 위한 써빙이 추가될 수 있다.

- ① 이 포인트를 가리키기 위한 한두 개의 노크 로케이터가 고정될 수 있다.
- ② 부가적으로 현 위에 입술이나 코의 표시(mark), 피플홀(peep-hole), 피플 홀드 인라인(hold-in-line) 장치, 루프 보우 스트링 등으로서 사용되는 부착물이 허용된다.

7.3.2.3 조정 가능한 애로우 레스트

- ① 이동 가능한 프레셔 버튼, 프레셔 포인트 또는 애로우 플레이트 모두는 전기식이나 전자식이 아니면 활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프레셔 포인트는 활 핸들(피봇 포인트)로 부터 6cm이상 뒤쪽(안쪽)으로 나오지 않는다.

7.3.2.4 드로우 확인장치는 전기 또는 전자식 이외의 청각 및 시각장치 사용이 가능하다.

7.3.2.5 활에 부착된 조준기

- ① 조준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화살의 편류 조정을 위해서 허용되며 수평장치, 확대 렌즈 및 프리즘과도 병합할 수 있다.
단, 전자식 또는 전자식 장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조준기 연장장치가 허용된다. 섬유질 시각 사이트 핀 혹은 화학적인 글로우 스틱(glow stick)도 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글

- ③ 로우스틱은 싸여져 있어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한쪽 시각에만 이용한다.

7.3.2.6 안정기(stabilizer)와 불량운동 보정장치(torque flight compensator)는 다음 작용을 하지 않는 한 활에 부착할 수 있다.

- ① 현을 보조(string guide)하여 도움을 주거나 활 이외의 다른것에 접촉되는 것.
- ② 발사선상에서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는 것.

7.3.2.7 어떤 유형의 화살이든지 표적경기에 사용되는 화살이라는 개념과 원리에 부합되며 화살이 표적지나 표적받침대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다.

- ① 화살은 포인트(point)에 달린 샤프트(shaft)와 노크(nock), 깃(fletching)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화살 식별표시(크레스팅:crestring)를 할 수 있다.

② 화살 샤프트의 최대 지름은 9.3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살 포인트의 최대 지름은 9.4mm일 수 있다.

③ 각 선수의 샤프트(shaft)에는 선수의 이름이나 머리글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어떤 엔드에 사용되는 모든 화살은 깃과 노크, 크레스팅 라인까지 모양과 색깔을 같게 해야 한다.

7.3.2.8 손가락 보호용구(finger protection)로는 손가락 골무(finger stall)나 팁(tip), 장갑(glove), 슈팅 탭(shooting tab) 또는 테이프(반창고) 형태로 된 것이 있는데 현을 끌어당기고 지탱하여 놓기 위해 사용이 허용된다.

① 활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착되지 않고 전기식이나 전자식 장치와 병합되지 않는 릴리즈 보조기구는 사용될 수 있다.

화살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 사이에 분리기구(separator)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앵커링을 목적으로 손가락 보호용구에 앵커판이나 그와 유사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활을 잡는 손에는 일반 장갑, 병어리 장갑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낄 수 있지만 그립(grip)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7.3.2.9 화살 득점을 확인하기 위한 쌍안경, 망원경, 기타 시각보조기구가 사용될 수 있다.

① 발사선상에서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에서 코치박스에 있는 코치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쌍안경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방을 받은 안경, 경기용 안경 및 선글래스도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마이크로 홀렌즈나 유사 장치를 부착할 수 없으며 조준에 도움을 주는 어떤 방법도 표시 할 수 없다.

③ 조준을 하지 않는 쪽 눈의 안경은 완전히 가리거나 안대를 사용할 수 있다.

7.3.2.10 허용되는 부속품(accessories)

① 팔 보호대(bracer, arm guard), 가슴보호대(dress shield), 보우 슬링(bow sling), 벨트, 지면에 세워 놓는 전통(ground quiver), 화살땀는 형곶(tassel), 지면에서 1cm 이상 돌출되지 않는 발 위치 표시기, 림 세이버(limb saver), 쌍안경이나 망원경 등을 위한 삼각대, 풍향지시기 등이 포함된다.

② 삼각대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발사선에 남겨 둘 수 있고 풍향지시기는 (리본이나 실 같은 것) 전기식/전자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발사선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부착할 수 있다. 발사선 뒤에서는 전자식 풍향지시기가 허용된다.

7.3.2.11 본 경기규정에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WA 헌장과 규칙내용을 우선 준용한다.<개정 2019.01.31>

7.3.3 모든 부분의 선수들에게 다음 장비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7.3.3.1 대기선 앞에서의 모든 전자 통신 장비 및 헤드셋

7.3.3.2 본 협회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전자 통신장비도 경기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7.3.4 WA가 주최, 주관하는 스탠다드 보우 등 모든 양궁경기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본

협회 경기규정에 정의하지 않은 경우 WA 현장 및 규칙에 정의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01.31>

그러나 필요시 KAA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7. 4 (장비파손)

7.4.1 장비파손의 정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일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불량하여 계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어 교체 또는 수리해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

7.4.1.1 다음의 장비들은 장비파손으로 인정되며 교체 및 수리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활(핸들과 림)이 부러지거나 화살을 발사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 조준기, 레스트, 크리커, 큐션프란저의 파손
- V-바 셋트 또는 스타비라이저의 파손
- <삭제 2024.01.23.>

7.4.1.2 7.4.1.1의 장비파손으로 인정된 경우 квалификация, элиминация,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15분간의 장비교체 및 수리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01.31.><개정 2024.01.23.>

7.4.1.3 <삭제 2024.01.23.>

7.4.1.4 올림픽라운드 파이널 경기를 중계방송하거나 특별한 경우 공식 대표자회의 및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사전 공지하고 장비파손에 의한 장비교체 및 장비수리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7.4.1.5 장비파손에 의해 진행중인 경기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파손된 장비를 즉시 교체할 수 있거나 예비활로 교체할 경우 해당경기가 잠시 지연될 수 있다.

7.4.1.6 장비파손일 경우 즉시 심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7.4.1.7 양궁경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파손 장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시간이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7.4.2 다음의 장비들은 장비파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화살(화살에 포함된 깃, 노크, 포인트 포함), 핑거탭, 가슴받이, 화살전통, 스탠드 큐바 핑거슬링, 암가드, 스트링에 표시한 마크, 등

7. 5 (발 사)

7.5.1 각 선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각각 3발(장 · 단거리)또는 6발(장거리) 썸의 엔드로 화살을 발사한다.

7.5.1.1 발사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하며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경기를 진행한다.

7.5.1.2 1440라운드(квалификация)는 하루에 또는 이를 연속해서 실시될 수 있다.<개정 2019.01.31>

만일 한 라운드가 이틀에 걸쳐 진행될 경우에는 첫째 날에 두 장거리를, 둘째 날에 두 단거리를 혹은 다른 방식의 라운드를 실시한다.

7.5.1.3 더블 1440라운드는 2일 또는 4일간 연속해서 실시한다.<개정 2019.01.31>

7.5.1.4 같은 날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다른 라운드뿐만 아니라 1440 라운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항상 1440 라운드를 먼저 실시한다.<개정 2019.01.31>

7.5.1.5 KAA 경기에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 모든 선수는 전 경기 참가는 의무적이다.

- ① 의료적인 사고, 장비파손, 분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발생시
- ② 기타 대회 조직위에서 인정할 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7.5.2 선수에게는 3발 또는 6발 1엔드를 발사하는데 시간제한이 있다.

7.5.2.1 한 선수가 3발 1엔드를 발사하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은 90초이다.

6발 1엔드의 경우에는 180초 허용된다. 또한, 세트시스템에서 교대 발사의 경우 1발을 발사하는데 1인당 2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3발 1세트는 6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단 체전에서 6발을 발사하는데 12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혼성전에서 4발을 발사하는데는 8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개정 2019.01.31.><개정 2022.03.31>

7.5.2.2 선수가 지정된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발사하거나 또는 순서가 아닌데 발사한 경우 그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인정되고 그 선수는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되며 기록상 0점(M: miss)으로 표기된다.

7.5.2.3 발사 통제관이 공식적 연습시간을 종료한 이후(화살을 표적에서 뽑아 낸 후)에 경기장에서 발사된 화살 또는 거리간이나 라운드간 사이의 휴식시간 동안 화살을 발사할 경우 선수는 다음 앤드에서 최고 득점가를 상실한다.

7.5.2.4 장비 이상시 선수는 발사선에서 뒤로 물러나 적색기를 들어 올린다. 이상이 있는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추가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선수는 심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적절한 화살 수를 보충한다.

7.5.2.5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장비이상으로 인해 **15분 이상** 대회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7.5.2.6 발사 시작이후 일어난 예기치 않은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 선수가 발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이 문제를 결정하고 선수가 도움없이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도록 15분 이하의 시간이 허용된다. 선수는 심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적절한 화살 수를 보충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15분**을 넘겨선 안 된다.

7.5.2.7 올림픽 라운드의 엘리미네이션과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장비 이상이나 예기치 않은 의료문제의 처리에 대한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비에 이상이 생긴 선수는 허용된 시간제한 내에서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후 남은 화살을 발사할 수 있다. 단체전일 경우 팀의 다른 선수가 그 동안에 발사할 수 있다.

7.5.2.8 부전승이거나 몰수경기에서의 개인, 단체의 점수는 기록되지 않고 다음라운드에 진출한다. 다른 경기의 경우 근접한 경기장이 없을 때에는 지정된 타켓에서 연습할 수 있다.

7.5.2.9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 팀 선수 3명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된 시간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관련 신호음 이전이나 이후에 화살을 발사하면 그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간주되고 그 팀은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되며 기록상 0점(M:

miss)으로 표기된다.

7.5.3 선수는 발사를 시작하는 신호가 주어지기 전에 보우암(Bow Arm : 활을 미는손)을 들거나 올릴 수 없다.

7.5.4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선수는 아무런 지지물 없이 발사선의 양쪽에 한 발씩을 딛거나 발사선에 두 발을 모두 딛고 선 자세로 발사한다.

7.5.5 어떤 상황 하에서도 화살은 재 발사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화살은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7.5.5.1 화살이 되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졌거나 잘못 발사되어 샤프트의 일부가 발사선과 3미터라인 사이 구역에 놓여 있을 경우.

7.5.5.2 (심판이 만족할 만큼 단단히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지 또는 표적받침대가 바람에 넘어진 경우 심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치를 측정하며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충한다. 표적받침대만 미끄러져 내려왔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심판이 결정한다.

7.5.6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선수가 발사선상에 있는 동안 팀 임원진으로부터 전자식이 아닌 코치를 받을 수 있다.

7.5.6.1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에서 팀의 3명의 선수와 코치는 발사선상에 있건 아니건 구두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7.5.6.2 발사하는 동안 코치는 코치박스에서만 코치할 수 있다.

7.5.7 모든 조준 발사는 발사통제관의 통제 하에 실시하며, 기록되지는 않는다.

7. 6 (발사순서와 시간통제)

7.6.1 1~3명 또는 4 명의 선수가 같은 표적받침대에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7.6.1.1 3명(4명)의 선수가 한 표적에 한 명(두명)씩 발사한다면 순번은 다음과 같다.

ABC, CAB, BCA, ABC (AB-CD, CD-AB, AB-CD)

7.6.1.2 세 명이나 네 명의 선수가 동시에 발사할 경우 발사선상에서의 위치는 상호 합의 하에 정한다. 합의가 없으면 표적에 배치된 **첫 번째 선수가 왼쪽에서 발사하고 두 번째 선수가 중앙에, 세 번째 선수가 오른쪽에서 발사한다.**

네 선수가 발사할 경우 위치는 그에 상응하여 배정된다.

7.6.1.3 80cm 중앙 복수표적지를 사용하여 발사할 경우 각 선수는 정해진 자기 중앙 표적지에 화살을 발사한다.

① 표적받침대당 선수가 세 명일 경우 왼쪽에 위치한 선수는 하단 왼쪽 중앙표적지에 발사하고 가운데 위치한 선수는 상단 중앙표적지에,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는 하단 오른쪽 중앙표적지에 발사한다.

② 표적받침대당 선수가 네 명일 경우 A선수는 상단 왼쪽 중앙표적지, B선수는 상단 오른쪽 중앙표적지에, C선수는 하단 왼쪽 중앙표적지에, D선수는 하단 오른쪽 중앙표적지에 발사한다.

7.6.1.4 발사순서는 현의 교체나 기타 필요한 장비의 조정 또는 경미한 의료 처치를 위해 임시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발사선상에서 그러한 장비 조정이나 의료 문제가 불가결할 경우, 선수는 발사선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깃발이나 기타 그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장치를 이용하여 심판을 부른다. 선수가 발사선을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심판은 선수가 그 엔드의 남은 화살을 발사할 수 있도록 득점기록을 위한 신호를 주기 전에 발사통제관과 함께 조정하고 이 사실을 확정기로 알린다.

7.6.2 KAA 올림픽라운드 전국규모 대회

7.6.2.1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는 2명~4명의 선수가 같은 표적에 배정될 수 있으며 두 장거리에서는 1엔드 6발 또는 1엔드 3발로 발사한다.<개정 2019.01.31>

7.6.2.2 올림픽 라운드 개인전

- ① 엘리미네이션과 파이널 라운드의 첫 번째 매치동안(대진표 상) 각 페어의 위쪽선수가 그 매치동안 왼쪽 편에서 경기하며 모든 매치동안 선수들의 오른쪽/왼쪽 위치는 대진표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적받침대의 배치는 본 협회의 재량이다.
- ② 128강(1/64)과 64강(1/32)과 32강(1/16)과 16강(1/8)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는 표적받침대 당 2명의 선수가 발사할 수 있고 8강(1/4)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는 각 선수가 별도의 표적받침대에 발사한다. 선수들은 득점을 기록하고 화살을 회수하기 위해 표적받침대로 간다. 필요시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같은 표적에 동시발사를 할 수도 있다.
- ③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세트 시스템(Set system)은 각 그룹별 선수들이 대진표에 따라 3발 5세트의 세트포인트로 승패를 구분하며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1발 슛오프로 결정한다(세트승점 2점, 동점 1점)<개정 2019.01.31>
- ④ 파이널라운드(개인매치, 교대발사)에서 각 선수는 별도의 표적받침대에 발사하며 득점기록과 화살회수를 위해 표적받침대로 가지 않는다. 선수는 득점기록 확인 및 화살 회수를 위한 대리인(agent)을 지명한다. 화살은 두 번째 세트 이후로 매 세트 완료 시 되돌려 준다. 필요시 동시발사 및 화살회수를 위해 표적받침대로 이동할 수 있다.<개정 2019.01.31>
- ⑤ 파이널 라운드에서 세트 시스템(Set system)은 각 그룹별 선수들이 대진표에 따라 3발 5세트의 세트포인트로 승패를 구분하며 세트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7.7.5.3항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세트승점 2점, 동점 1점)<개정 2019.01.31>
- ⑥ 교대 발사하는 매치경기에서는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높은 점수를 득점한 선수가 첫 세트의 순서를 결정하며 낮은 세트 누적점수를 기록한 선수가 다음 세트에서 먼저 발사 한다. 동점일 경우 첫 번째 세트에서 먼저 발사한 선수가 먼저 발사한다.<개정 2019.01.31>
- ⑦ 세트 시스템에서는 1발당 20초 내에 한발씩, 동시 또는 교대로 발사할 수 있으며 마지막세트(3세트 또는 5세트)에서 포인트가 동점 일 경우 1발의 슛 오프로 결정한다.(슛 오프가 동점일 경우 7.7.5.3항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개정 2019.01.31>

7.6.2.3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 (양 팀이 동시에 발사)

- ① 한 팀은 3~4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 ② 엘리미네이션과 파이널 라운드의 첫 번째 매치동안(대진표 상) 각 페어의 위쪽선수가 그 매치동안 왼쪽 편에서 경기하며 연속되는 매치동안 선수들의 오른쪽/왼쪽 위치는 대진표대로 계속된다.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적받침대의 배치는 본 협회의 재량이다.
- ③ 양 팀은 1미터라인 뒤에 각 팀의 3명의 선수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매치의 각 세트를 시작한다. 경기시작 시계를 작동시킬 때 첫 번째 선수가 1미터 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개정 2019.01.31>
- ④ 팀의 3명 선수들은 그들이 정한 순서대로 각각 2발의 화살을 발사한다.
- ⑤ 한 선수가 발사선에 있는 동안 다른 두 명의 선수는 1미터라인 뒤에 대기한다. 한 번에 두 선수이상이 1미터 라인을 넘거나 라인 앞쪽에 있을 수 없다.
- ⑥ 활체어를 탄 선수는 매치경기 중 발사선에 있을 수 있다. 이 선수들은 활을 무릎에 수평으로 놓음으로써 발사가 종료되었음을 표시한다.
- ⑦ 발사를 위해 앞으로 나갈 때 선수는 전통에서 화살을 뺄 수 없으며 오직 발사선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7.6.2.4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 파이널 라운드(교대 발사시)

- ① 한 팀은 3명, 또는 4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 ② 양 팀은 1미터라인 뒤 선수구역에 각 팀의 3명의 선수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매치의 각 세트를 시작한다.<개정 2019.01.31>
- ③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높은 등수의 팀이 첫 번째 세트의 발사순서를 결정한다. 낮은 세트 누적점수를 얻은 팀이 다음 세트 발사를 시작한다.<개정 2019.01.31>
만일 팀들이 세트 승점이 동점을 이룬 경우에는 첫 번째 세트에서 먼저 발사한 팀이 먼저 발사한다.<개정 2019.01.31>
- ④ 첫 번째 팀이 3발을 발사하고 선수가 1미터라인 뒤로 물러날 때, 그 팀의 시계는 남은 시간을 표시한 채 멈춰진다.
- ⑤ 첫 번째 팀의 마지막 화살 득점이 표적받침대에 있는 점수판에 표시되면 두 번째 팀의 시계가 작동되고 첫 번째 선수는 1미터 라인을 넘어서 발사를 시작할 수 있다.
- ⑥ 이것은 각 팀이 6발을 발사하거나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반복된다.
- ⑦ 단체전에서 교대발사를 할 경우에 팀 멤버들이 교대로 발사해서 각각의 로테이션에 각각의 멤버가 한발씩 발사해야 한다.

7.6.3 기타 대회에서의 올림픽 라운드

7.6.3.1 아래 사항 외에는 7.5.2항 참조

- ① 16강(1/8)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본 협회는 1명(2명)의 선수를 한 표적에 배정할 수 있다. 득점을 확인하여 기록지에 기록하고 화살을 회수하기 위해 표적으로 간다.
- ② 8강(1/4)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표적당 한 선수가 배정된다. 매치는 본 협회의 재량으로 동시에 발사될 수도 있다. 득점기록 및 화살 회수를 위해 표적으로 갈 수 있다.

만약 개별 매치시간을 재는 카운트 시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발사통제관이 통제한다.

③ 그 밖의 모든 파이널 라운드(개인매치, 교대발사)에서도 선수들은 별도의 표적 또는 같은 표적에 발사하거나 득점기록 및 화살 회수를 위해 표적으로 갈수 도 있다.

7.6.3.2 올림픽 라운드 퀄리피케이션 단체전

① 한 팀은 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퀄리피케이션 라운드 시작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② 멤버는 반드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 참가해야 하고 변경될 수 없다.

7.6.4 발사시간과 시간제한

7.6.4.1 올림픽라운드 매치 교대발사시 한 선수가 한 발 발사하는 허용시간은 20초이다.<개정 2022.03.31>

7.6.4.2 동점구분을 위한 보충화살 발사 허용되는 시간은 한 선수 / 한 발당 30초이다.<개정 2022.03.31>

7.6.4.3 올림픽 팀 라운드 동점처리시 한 선수 당 1발, 한 팀이 3발을 발사하는데 허용 시간은 1분이다.

7.6.4.4 한 선수당 1엔드 3발 발사 시간은 90초, 올림픽 팀 라운드에서 6발을 발사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2분이다.<개정 2022.03.31>

7.6.4.5 한 선수가 6발 1엔드를 발사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180초이다.<개정 2022.03.31>

7.6.4.6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간제한이 연장될 수 있다.

7.6.5 시각, 청각 시간제한

7.6.5.1 신호등에 의해 발사가 통제될 경우(올림픽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예외)

○ 빨간색 : 발사 통제관은 2회의 신호음을 보내 지정된 선수들(A, B, C나 AB, CD 모두 함께 발사선으로 나오게 한다(올림픽 라운드 단체전은 예외)

○ 초록색 : 20초(모든 매치경기에서는 10초) 후에 초록색으로 바꾸며 발사통제관은 1회의 신호음을 보내 발사시작을 알린다.

○ 노란색 : 30초 남았을 때 노란등 점등 : 파이널 라운드에서 교대 발사시 제외.

○ 빨간색 : 시간제한 종료. 비록 모든 화살이 발사되지 않았을지라도 2회의 신호음이 울리면 발사를 중지하고 발사선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대기선 뒤로 물러나야 한다. 다른 지정된 선수들이 있다면 그 선수들은 발사선으로 나와 발사시작을 위해 상기와 같이 초록 등이 켜지길 기다린다. 이 절차는 모든 화살이 발사될 때까지 반복된다. 6발이 3발씩 2엔드로 발사될 때는 상기 과정이 득점기록 전에 반복된다.

발사해야하는 모든 화살수의 발사가(1엔드 3, 6발, 또는 3발씩 2엔드)(6발-단체전 3X2발) 끝나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득점기록을 하기위한 3번의 신호음이 난다.

7.6.5.2 신호판에 의해 발사가 통제될 경우 : 신호판의 양면(모두 노란색이거나 검정색/노란색 줄무늬)이 남녀 선수 모두에게 동시에 보여지도록 두 개의 신호판을 구분선에 놓아야 한다. 검정색/노란색 줄무늬 면은 시간제한 종료 30초 전에 경고 표시로서 선수들을 향해 돌려진다.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신호판의 노란색 면이 선수들을 향해 돌려진다.

7.6.5.3 시간제한 종료 전에 모든 선수의 발사가 완료되어 발사선이 비게 될 때마다 교체나 득점기록을 위한 적절한 신호가 즉각 주어진다.

7.6.5.4 1매치 이상이 교대발사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있을시에는 매치시작 이외에 각각의 발사를 알리는 청각신호를 주지 않는다.

7.6.6 어떤 선수도 적절한 신호가 주어질 때를 제외하고 발사선에 있을 수 없다.

7.6.6.1 선수가 발사선을 떠나고 다음 지정된 선수가 발사선에 들어가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20초이다. 이는 2회의 신호음과 빨간 신호등에 의해 지시된다.

7.6.6.2 교대 발사하는 싱글매치경기에서 양 선수들은 발사선에서 스스로 위치를 정한다. 10초 후 첫 번째 선수가 20초의 허용된 발사시간을 시작하도록 1회의 신호음을 주며 첫 번째 화살득점이 게시되면 두 번째 선수의 20초 발사시간을 알리는 1회의 신호음이 주어진다. 선수들은 각 선수가 3발을 다 쏠 때까지 교대발사를 계속한다.<개정 2022.03.31>

7.6.7 만일 어떤 이유로든 엔드중 발사가 중단되면 시간제한이 조정된다.

7.6.7.1 올림픽라운드 개인전에서는 1발당 20초가 주어진다. 혹은 동시발사 시 30초가 주어진다.<개정 2022.03.31>

7.6.7.2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는 긴급 상황으로 발사가 중단된 때 남은 시간에 5초를 더하여 시계를 재 작동시킨다. 발사는 발사선으로 부터 재개된다.

7.6.7.3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는 1발당 20초가 주어진다. 혹은 동시발사 시 30초가 주어진다.<개정 2022.03.31>

발사는 발사선으로 부터 재개된다.

7. 7 (득점기록)

7.7.1 표적받침대당 한 명의 기록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기록원이 있다.

7.7.1.1 표적받침대당 한 선수 이상이 배정되었을 때는 선수가 기록원이 될 수 있다. 한 표적받침대에 한 명의 기록원이 임명된다.

7.7.1.2 90m, 70m, 60m에서 득점은 6발 1엔드가 끝날 때 마다 기록된다.

7.7.1.3 50m,40m,35m,30m,25m,20m 득점은 3발 1엔드가 끝날 때마다 기록된다.

7.7.1.4 기록원은 해당 선수가 부르는 각 화살의 득점가를 기록지에 고 득점 순으로 기록한다. 그 표적받침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부르는 각 화살의 득점가를 확인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정된 심판에게 최종결정을 요청한다.

7.7.1.5 올림픽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는 선수가 화살득점가를 부른다. 상대선수가 득점가를 확인하고 불 일치시 지정된 심판이 최종 결정한다.

7.7.1.6 올림픽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단체전에서는 고 득점 순으로 각 팀의 6발 득점이 누적되어 기록되며, 모든 선수가 표적받침대로 갈수 있고 팀 중 한명의 선수가 점수를 부른다. 상대팀이 득점가를 확인하고 불 일치시는 지정된 심판이 최종결정을 한다.

7.7.1.7 올림픽 파이널 라운드에서 화살 득점가는 화살이 발사된 순서대로 득점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공식 최종 득점기록이 표적받침대에서 이루어질 때 선수 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비공식 기록 득점은 검토·변경된다. 상대 선수/팀의 대리인이 득점가를 확인하고 불 일치가 있을 경우 지정된 표적심판이 최종결정을 한다.

7.7.1.8 표적양궁에서 선수자신이 표적받침대로 갈 수 없다면(예: 장애인 선수) 팀 단장, 같은 표적을 사용하는 선수에게 득점을 기록하고 화살 회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7.2 화살 득점가는 표적지에 있는 화살의 샤프트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샤프트가 두개의 색깔에 걸쳐 있거나 혹은 두 점수구역 사이의 분리선에 닿아 있다면 높은 쪽의 득점가가 기록된다.

7.7.2.1 표적지에 있는 모든 화살 득점이 기록될 때까지 화살이나 표적지를 만지지 않는다.

7.7.2.2 요구된 발사 수 이상의 화살이 표적받침대나 표적받침대 근처 지면에서 또는 발사 레인에서 발견될 경우 득점가가 가장 낮은 3발(경우에 따라 6발 또는 9발)만이 기록된다. 이 위반이 반복되어 발각되는 선수나 팀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7.7.2.3 분리선이나 2개의 색깔이 만나는 지점을 포함하는 표적지 조각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또는 분리선이 화살에 의해 옆으로 밀렸을 경우 이 부분에 맞은 화살의 득점가는 가상의 연장선에 의해 판정된다.

7.7.2.4 화살의 득점을 기록하고 표적지에서 화살을 뽑을 때마다 득점구역에 있는 모든 화살 구멍은 적절히 표시된다.

7.7.2.5 표적지에는 보이지 않고 표적받침대에 꽂힌 화살은 심판만이 득점을 기록할 수 있다.

7.7.2.6 화살 적중

❶ 화살이 표적 받침대를 맞고 되튀어 나왔을 경우 :

- 만일 표적지에 있는 모든 화살 구멍이 표시가 되었고, 표시 안 된 구멍과 표시된 구멍이 확인이 된다면 표적지에 남아 있는 표시에 따라 득점이 기록된다.
- 각 표적받침대당 한 선수가 한 번에 한 발씩 발사한 경우 화살이 되 튀어나왔다면, 관련 선수는 3발 또는 6발 엔드 발사 후 심판에게 보내는 신호로서 기를 머리위로 올려 알리고 발사선에 남아 있어야 한다.
- 각 표적받침대당 한 명 이상이 발사한 경우 화살이 되 튀어나왔다면, 그 표적받침대에 있는 선수들은 발사를 멈추고 심판에게 보내는 신호로서 기를 선수 중 한 명의 머리위로 올린 채 발사선에 남아 있다.
- 모든 선수들이 그 엔드의 화살 발사를 종료했거나 시간제한이 만료되었다면 발사 통제관은 발사를 중단시킨다. 되 튀어나온 화살이 있는 선수는 심판과 함께 표적받침대로 간다. 심판은 표적에 맞은 자국을 판정하고 득점가를 적어 두고 구멍을 표시한다. 나중에 심판은 그 엔드의 득점기록시 참관한다.

되 튀어나온 화살은 그 엔드의 득점이 기록될 때까지 표적받침대 뒤에 남겨 두어야 한다. 경기장이 정돈되면 그 선수들이 되 튀어나온 화살이 있던 표적받침대에서 계속 발사하도록 신호를 준다.

- 이 선수들은 일반적인 발사나 득점기록이 재개되기 전에 3발 또는 6발 엔드를 완료한다. 그 사이에는 어떤 선수도 발사선에 있어서는 안된다.

② 화살이 표적받침대를 맞고 표적받침대에 매달려있는 경우

: 그 표적받침대의 선수들은 발사를 중지하고 기로 신호를 보낸다. 발사선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그 엔드의 발사를 완료했다면 그 선수와 함께 심판은 표적으로 가서 화살의 득점가를 적어 두고 화살을 뽑고는 구멍을 표시한 다음 화살을 표적받침대 뒤에 놓아둔다. 발사통제관이 일반적인 발사나 득점기록을 계속하도록 명령하기 전에 그 표적받침대의 선수(들)는 남은 화살을 발사한다.

관련 심판은 그 엔드의 득점 기록시 참관한다.

③ 화살이 표적받침대를 맞고 표적받침대를 완전히 관통했을 경우 : 모든 화살구멍이 표시되었고 표시 안 된 구멍이 확인되면 구멍의 득점가에 따라 득점이 기록된다.

④ 화살이 표적에 있는 다른 화살의 나크에 맞고 거기에 그대로 꽂혀 있을 경우

: 표적에 있는 화살의 득점가와 동일한 득점가를 기록한다.

⑤ 화살이 다른 화살에 맞고 표적지에 맞았을 경우 : 표적지에 있는 득점을 기록한다.

⑥ 화살이 다른 화살에 맞고 되 튀어나왔을 경우

: 손상된 화살이 확인된다면 먼저 표적에 있던 화살의 득점가를 기록한다.

⑦ 자신의 표적 이외의 표적에 맞은 화살은 0점(M:miss)으로 기록된다.

⑧ 득점구역 가장 바깥쪽 너머의 표적지는 0점(M: miss)으로 기록된다.

7.7.2.7 발사 레인의 지면 위나 표적받침대 뒤에서 화살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화살이 되 튀어나온 것이거나 관통한 것으로 주장되려면 심판이 판단하기에 그 화살이 그 표적 받침대에 첫 번째로 맞은 것이어야 한다. 만일 화살이 되튀어 나오거나 관통한 후에 표적지의 득점구역에 표시되지 않은 구멍이 한 개 이상 있다면 가장 낮은 점수의 구멍의 득점가가 선수에게 주어진다.

7.7.2.8 올림픽라운드에서는 화살이 표적에서 되튀어 나오거나 표적받침대를 관통하거나 표적에 매달려 있어도 경기가 중지되지 않는다.

7.7.2.8 발사하지 않은 화살은 점수카드에 “M”이라고 표시한다.

7.7.3 발사통제관은 득점기록이 완료된 후, 발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신호를 주기 전에 표적에 어떤 화살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7.7.3.1 만일 뜻하지 않게 화살이 표적받침대에 있다면 발사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① 선수는 다른 화살로 그 엔드를 발사하거나 그 거리의 발사가 완료된 후에 보충 발사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은 그 엔드의 득점기록에 참여하여 어떤 화살이든 표적에서 회수하기 전에 전

엔드에서 표적에 남아 있었던 화살들이 선수의 기록지에 표시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7.7.3.2 한 선수가 표적받침대 부근에 화살을 남겨 놓고 왔을 경우, 선수가 발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심판에게 통지하였다면 다른 화살을 사용 할 수 있다.

7.7.4 각 화살의 득점가에 동의한다는 표시로써 기록원과 선수는 기록지에 서명을 한다.

7.7.4.1 만일 기록원이 선수 중 한명이라면 같은 표적을 사용하는 다른 선수가 그 선수의 기록지에 서명한다.

7.7.4.2 엘리미네이션 라운드에서 2명의 선수는 점수카드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양 선수는 각각의 점수, 전체점수, X의 개수, 매치의 결과에 동의해야 한다.

7.7.5 동점이 나올 경우, 순위는 다음 순서로 결정된다.

7.7.5.1 7.6.5.2항의 동점을 제외한 모든 라운드에서의 동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개인전 및 단체전

– 10점 수(안쪽 10점 포함) ➡ X 수(안쪽 10점)

– 그래도 동점이라면 그냥 동점처리 하지만, 순위 목적 즉 엘리미네이션의 매치 경기 대진표의 위치를 위해서라면 동전던지기로 순위를 결정한다.

7.7.5.2 엘리미네이션 라운드로의 진출을 결정하는 동점을 위해 또는 경기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결정하는 매치에서 또는 매치 경기 후 메달을 결정하기 위해 동점을 구분하기 위한 슛 오프를 실시한다(히트 수, 10점수, X수는 사용되지 않는다)

① 엘리미네이션 진출을 결정하는 동점은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결과가 확인되자마자 마지막으로 발사된 거리에서 구분된다. 30m에서 슛 오프를 위한 표적은 다음과 같다.

② 개인전에서는 경기장 중앙의 중립 표적받침대에 표적받침대당 한 선수가 배정된다.

③ 개인전에서 복수 중앙표적지에 발사할 경우 선수는 경기에서 사용했던 같은 위치(A, B, C 또는 D)의 중앙표적지에 발사한다.

④ 각 단체전에서는 경기장 중앙에 하나의 표적지 또는 삼각 표적지 장치가 있는 세 개의 80cm 중앙표적지가 있는 하나의 표적받침대가 사용된다. 복수 중앙표적지가 사용될 경우 각각의 팀 멤버들이 어떤 중앙 표적지에 발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7.7.5.3 개인전(매치 플레이)

① 득점기록을 위해 단발 슛 오프를 시작한다.

② 만약, 동점의 상황에서는 거리를 측정하여 중앙에서 더 가까운 화살을 발사한 선수가 승리한다.<개정 2019.01.31><개정 2022.03.31>

③ 양 선수가 득점 구간에 발사하지 못한 경우, 양 선수 모두 추가 발사를 진행한다.<개정 2019.01.31>

7.7.5.4 단체전(매치 플레이)

① 득점기록을 위해 3발(단체전 선수당 1발씩) 또는 2발(혼성전 선수당 1발씩) 1엔드 슛 오프를 실시한다.<개정 2019.01.31>

② 점수 합계가 동점이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화살을 쏜 팀이 승자가 된다.<개정 2019.01.31>

③ 그래도 동점이면 중심에서 두 번째(또는 세 번째)로 가까운 화살이 승자를 결정한다.

④ 필요하다면 동점이 구분될 때까지 3발(선수당 1발씩) 슛오프를 실시하고 승패를 가려낸다.<개정 2019.01.31>

⑤ 단체전 슛 오프에 대한 시간제한은 1분이다.

7.7.5.5 슛 오프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을 때까지 선수들은 경기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통보된 슛 오프에 참석하지 않은 선수는 그 매치의 패자로 공표된다.

7. 8 (발사통제와 안전)

7.8.1 한 명의 발사통제관이 임명된다.

7.8.1.1 가능할 때는 언제나 심판이 되지만 발사에 참여할 수 없다.

7.8.1.2 필요하다면 조직위의 재량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사통제관을 지원하는 보조원을 임명할 수 있다.

7.8.2 발사통제관은 적당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7.8.2.1 발사를 통제하고 엔드별 시간과 선수들이 발사선에 서는 순서를 조절한다.

7.8.2.2 선수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확성기의 사용, 사진 기자들의 활동 등을 통제한다.

7.8.2.3 관중이 경기구역을 둘러싼 울타리 뒤에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7.8.2.4 긴급한 경우 모든 발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긴급한 상황을 선수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신호음이나 안내방송을 보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엔드 동안 발사가 중단되었다면 발사를 계속하도록 1회의 신호음을 주어야 한다.

7.8.2.5 만일 발사통제관이 선수가 불가항력에 의해 늦게 도착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발사가 시작된 후에 도착한 선수는 그때까지 발사된 화살 수만큼 화살을 몰수 당한다. 단 발사통제관이 불가항력적 상황을 인정한다면 선수는 그 당시 발사되던 거리가 완료된 후 상실한 화살을 보충 발사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12발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림픽라운드에서는 보충 화살을 발사할 수 없다.

7.8.2.6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사통제관은 심판과 협의하여 시간제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결정은 시행되기 전 선수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 최종 경기결과 리스트에 특별한 결정과 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각시간 통제장치가 사용된다면 종료 30초 전에 알리는 신호는 같다.

7.8.3 발사선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수도 화살이 있든 없든 활을 당길 수 없다. 만일 화살이 사용되었다면 선수는 표적받침대를 향해 조준을 한다. 단 표적받침대 주변(앞 뒤 모두)의 경기장이 정돈이 되었다고 확인이 된 후에만 조준을 한다.

7.8.3.1 만일 발사시작 전이나 거리별 경기 사이 휴식시간동안 화살을 걸고 활을 당기는 사이에 선수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화살이 발사되었다면 다음 엔드의 최고점을 잃는다.

7.8.3.2 심판/기록원은 선수의 기록지에 ①항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엔드(경우에 따라 3발, 또는 6발)의 모든 득점가를 기록하지만 최고 득점가 화살은 몰수된다.

기록지상의 이러한 기재는 심판과 관련선수가 머리글자로 서명해야 한다.

7.8.4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사순서가 된 선수들만이 발사선상에 있을 수 있다.

7.8.4.1 모든 다른 선수들은 대기선 뒤에 남아 있다. 선수는 화살들을 발사한 후 즉각 대기선 뒤로 물러난다. 선수들은 엔드사이에 망원경을 발사선에 두고 올 수 있다.

7.8.4.2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는 한 번에 한 선수만 발사를 위해 발사선에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두 명의 선수는 첫 번째 선수가 1미터라인 뒤에 남아 있어야 한다.

7.8.5 어떤 선수도 동의 없이 다른 선수의 장비를 만질 수 없다. 동의 없이 다른 선수 장비를 만졌을 경우 심각한 벌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8.6 선수구역은 물론 경기구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연구역이다.

7.8.7 심판이 판단하기에 선수가 활의 현을 뒤로 당겼다가 뜻하지 않게 발사가 될 경우 선수는 화살이 안전구역이나 안전장치(표적 뒤쪽 일정구역, 그물, 벽 등)를 넘어 날아갈만한 어떤 기술도 사용해선 안 된다. 만일 선수가 계속해서 그러한 기술을 사용한다면 심판위원장 또는 발사통제관은 안전을 위해 선수가 즉각 발사를 중지하고 경기장을 떠나도록 요청한다.

7. 9 (규정 위반 시)

다음은 선수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충족시키지 않았을 시 적용되는 벌칙의 요약이다

7.9.1 자격, 무자격

7.9.1.1 KAA 경기규정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KAA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

7.9.1.2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선수는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탈락될 수도 있고 그가 얻었던 어떤 위치도 상실하게 된다.

7.9.1.3 약물복용 사실이 발각된 선수는 다음 벌칙들을 받게 된다.

- ① 관련 회원국이 부가한 벌칙에 상관없이 WA는 대회에서 얻어진 결과를 무효 처리하며 수여된 어떤 상이나 메달도 WA 사무국에 반납되어야 한다.<개정 2019.01.31>
- ② 만약 그 선수가 단체전에 출전했었다면 그 팀의 결과도 무효 처리된다.
- ③ 약물복용으로 자격이 정지된 선수는 자격정지가 끝나기 전에는 KAA가 조직하거나 운영 및 후원하는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7.9.1.4 WA 현장 및 규칙과 KAA 경기규정에 위반되는 장비를 사용한 것이 발각된 선수는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경기결과 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01.31>

7.9.1.5 엔드 당 허용된 화살 수보다 더 많은 화살을 발사한 사실이 반복해서 발각된 선수나 팀은 점수를 박탈당할 수 있다.

7.9.1.6 고의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증명된 선수는 동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판정될 수 있다. 선수는 탈락되며 그가 얻었던 어떤 위치도 상실하게 된다.

7.9.2 득점가 상실

7.9.2.1 발사통제관이 선수가 불가항력에 의해 늦게 도착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발사가 시작된 후에 도착한 선수는 이미 그때까지 발사된 화살 수만큼 화살을 몰수 당한다.

7.9.2.2 장비이상시 보충화살을 위한 표준 발사순서 뒤에 15분내에 발사될 수 있는 화살 수 만큼 보충발사를 하도록 허용된다. 다른 모든 화살들은 상실하게 된다.

7.9.2.3 선수가 지정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발사하거나 또는 순서가 아닌데 발사한 경우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인정되고 선수는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며 기록상 0점(M: miss)으로 표기된다.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어 올려 반칙을 알린다.

7.9.2.4 발사통제관이 공식적으로 연습시간을 종료한 이후에 경기장에서 발사된 화살 또는 거리간, 라운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화살을 발사할 경우 해당선수는 다음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된다.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어 올려 반칙을 알린다.

7.9.2.5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에서 팀 선수 3명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된 시간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관련 신호음 이전이나 이후에 화살을 발사하면 그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간주되고 그 팀은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되며 기록상 0점(M: miss)으로 표기된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어 올림으로써 반칙을 알린다.

7.9.2.6 요구되는 발사 수 보다 많은 화살이 표적받침대나 표적받침대 근처 지면에서 또는 발사 레인에서 발견될 경우 득점가가 가장 낮은 3발(경우에 따라 6발 또는 9발)만이 기록된다.

7.9.2.7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 팀의 한 선수가 3발 이상 발사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 ① 어떤 선수가 6발 엔드의 자신의 2발 모두를 발사하지 못했다면 발사되지 않은 화살 수는 그 엔드의 일부이다. 발사되지 않은 화살은 기록상 0점(M: miss)으로 기록된다.
- ② 한 엔드에서 발사되지 않은 화살을 포함, 총 화살 수가 6발을 초과한다면 7.8.2.6 항이 적용된다.

7.9.2.8 1m 선 뒤로 돌아오기 전 팀 화살 발사 수보다 많은 화살을 발사했을 경우 팀은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한다.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어 올려 반칙을 알린다.

7.9.2.9 자신의 표적지 이외의 표적지에 맞은 화살은 0점(M:miss)으로 기록된다.

7.9.3 단체전 시간벌칙

7.9.3.1 팀의 한 선수가 1미터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설 경우 심판은 노란카드를 들거나 발사선 앞의 노란 등을 켜다. 이 카드나 등은 선수가 1미터 라인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1미터 라인 뒤에서 시작해야 하는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7.9.3.2 팀이 노란 카드(또는 등)를 무시하고 발사를 한 경우 그 팀은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된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어 올림으로써 반칙을 알린다.

7.9.3.3 만일 팀의 한 선수가 발사선에 서기전에 전통에서 화살을 뺄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7.9.4 경 고

한번 이상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KAA 경기규정을 위반하는 선수 또는 소속임원, 지정된 심판이 내린 결정이나 지도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경기규정을 위반한 것이 증명된 선수와 소속팀 임원에 대해 대회참가 자격이 없다고 판정할 수도 있다. 이때 해당선수 및 임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탈락, 또는 그가 획득한 어떤 위치도 상실될 수 있다.

7.9.4.1 선수구역을 포함한 경기장 구역은 금연구역이다.

7.9.4.2 어떤 선수도 동의 없이 다른 선수의 장비를 절대로 만질 수 없다.

7.9.4.3 발사선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수도 화살이 있든 없든 활을 당길 수 없으며 심할 경우 제제를 당할 수도 있다.

7.9.4.4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사 순서인 선수들만이 발사선상에 있을 수 있다.

7.9.4.5 선수는 발사를 시작하는 신호가 주어지기 전에 **보우 암**(Bow Arm : 활을 미는 손)을 들 수 없다.

7.9.4.6 표적받침대에 있는 모든 화살 득점이 기록지에 기록될 때까지 표적지와 화살을 절대 건드리거나 만질 수 없다.

7.9.4.7 심판이 판단하기에 선수가 활의 현을 뒤로 당겼다가 뜻하지 않게 발사가 될 경우 선수는 화살이 안전구역이나 안전장치(표적받침대 뒤쪽 일정구역, 그물, 벽 등)를 넘어 날아 갈만한 어떤 기술도 사용해선 안 된다.

7. 10 (심 판)

7.10.1 심판의 임무는 대회가 KAA 경기규정에 따라 모든 경기에 공정하게 실행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7.10.1.1 10개 표적 받침대당 최소 1명의 심판을 임명하여 배치한다.

7.10.1.2 심판은 경기장의 올바른 배치 및 표적지 부착과 높이, 표적받침대의 표준각도, 거리편차 등 필요한 경기용구를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10.1.3 심판은 발사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사통제관과 협의하며 신호등, 전자시계 등 모든 필요한 경기장 장비를 점검하여 선수의 발사행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 통제하여야 한다.

7.10.1.4 심판은 대회 전(대회일정에 나와 있는 시간)과 대회 중 어느 때든 모든 선수가 사용하는 경기용 장비를 점검할 수 있다.

7.10.1.5 심판은 득점 기록의 시행을 지도, 통제하고 제기될 수 있는 분쟁과 항의를 분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청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7.10.1.7 심판은 필요시 발사통제관과 연락하여 날씨조건, 정전, 심각한 사건, 사고로 인한 발사의 중단을 결정하고 가능한 그 날 그 날의 일정이 당일에 완료되도록 한다.

7.10.1.8 팀 단장 또는 팀 대표자로부터 제기된 불만이나 항의 또는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결정은 단순 과반수 투표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7.10.1.11 심판은 발사행위나 선수의 행위에 관련된 질의를 다룬다. 이 질의는 지체

없이 심판에게 제기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시상 전에 해야 한다. 적용되는 심판이나 소청위원의 판정은 최종적이다.

7.10.1.12 심판은 선수와 임원은 KAA 경기규정뿐 아니라 WA 헌장과 규칙, 필요에 따라 심판이 내린 결정이나 지도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통제한다.<개정 2019.01.31>

7. 11 (질의 및 쟁의)

7.11.1 실외표적양궁종목에서 어떤 선수가 표적지의 화살 득점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표적에서 화살을 뽑기 전에 심판에게 제기해야 한다.

표적에 화살이 없는 경우 어떤 이유든 소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7.11.1.1 심판의 결정이 최종이다.

7.11.1.2 수정에 모든 선수들이 동의한다면 화살을 뽑기 전에 발견된 기록지상의 실수는 수정될 수 있다. 표적의 모든 선수가 수정을 목격해야하고 머리글자로 서명해야 한다. 기록지상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모든 다른 분쟁들은 심판에게 제기해야 한다.

7.11.1.3 기록지에 상대선수와 기록이 바뀌어 기재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경기중간 해당 엔드의 기록이 바뀌어 기재되었음이 다음엔드 기록전 발견되었다면 같은 표적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동의할 경우 심판이 참관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경기종료 후 모든 기록이 상대기록지에 바뀌어 기재하였음이 증명될 경우 해당표적 선수들이 동의하고 심판이 참관하여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③ 기록이 바뀌어 기록지에 기재되었음이 2엔드 이상 경기가 진행된 뒤 발견되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록 수정을 할 수 없다.

7.11.1.3 경기장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표적지가 터무니 없이 찢어졌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선수나 팀 단장은 결함이 있는 품목을 대체하거나 수리하도록 심판에게 건의할 수 있다.

7.11.2 발사행위나 선수의 행위에 관련된 질의는 다음 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심판에게 제기해야 한다.

7.11.2.1 매일 발표되는 결과에 관한 질의는 지체없이 심판에게 제기해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시상 전에 정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12 (항 의)

7.12.1 심판이 내린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선수는 상기 7.11.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3.1.8항**에 따라 소청위원회에 항의할 수 있다.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시상식은 소청위원회 판정을 내릴 때까지 개최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본 경기규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① 본 경기규정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규정은 FITA 헌장 및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 ② FITA 경기규정과 KAA 경기규정이 상이한 경우 KAA 경기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FITA 경기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31)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2019.01.3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① 본 경기규정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규정은 국제양궁연맹(WA) 헌장 및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 ② 국제양궁연맹(WA) 경기규정과 KAA 경기규정이 상이한 경우 국내 경기에 한해 KAA 경기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국제양궁연맹(WA) 경기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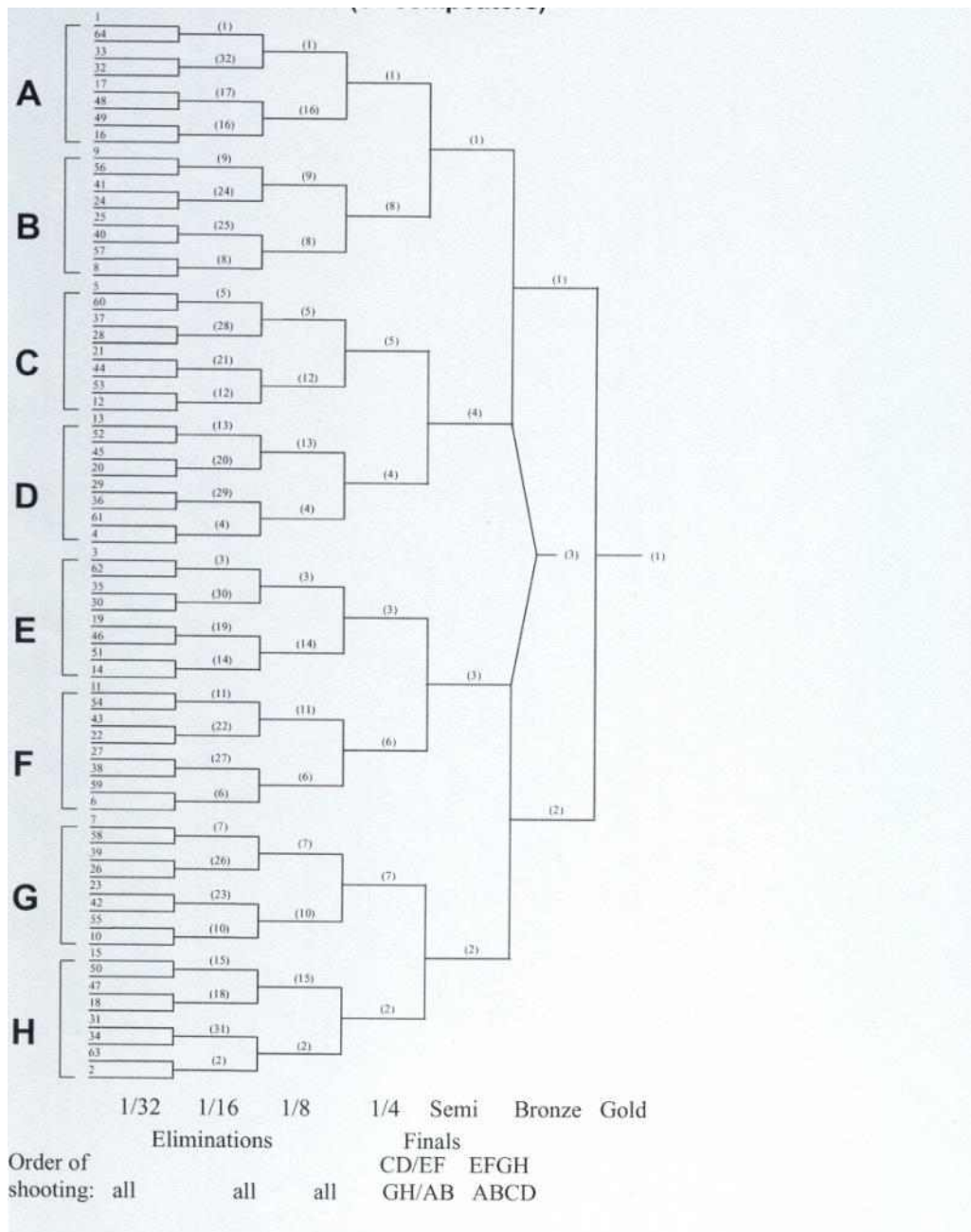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2022.0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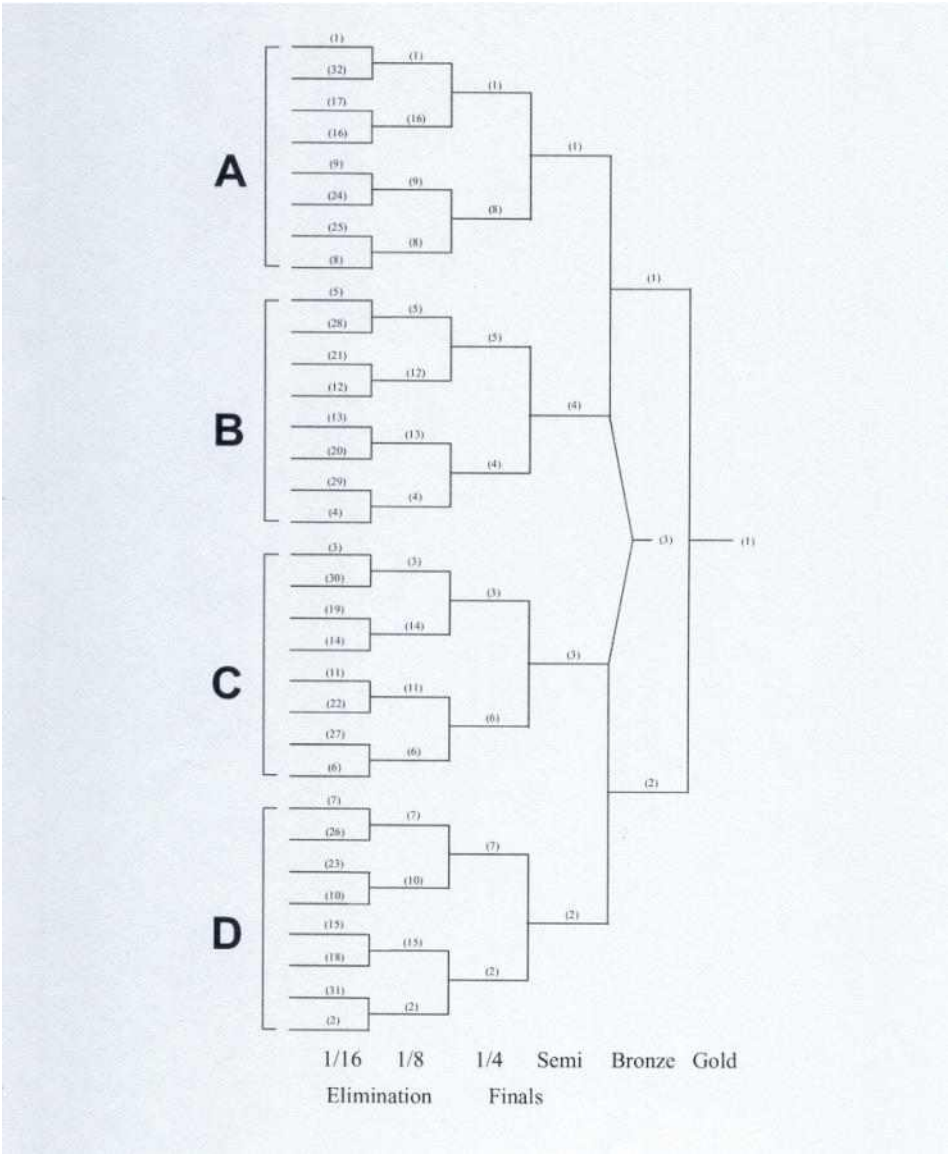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2024.01.23)부터 시행한다.

부록 1 대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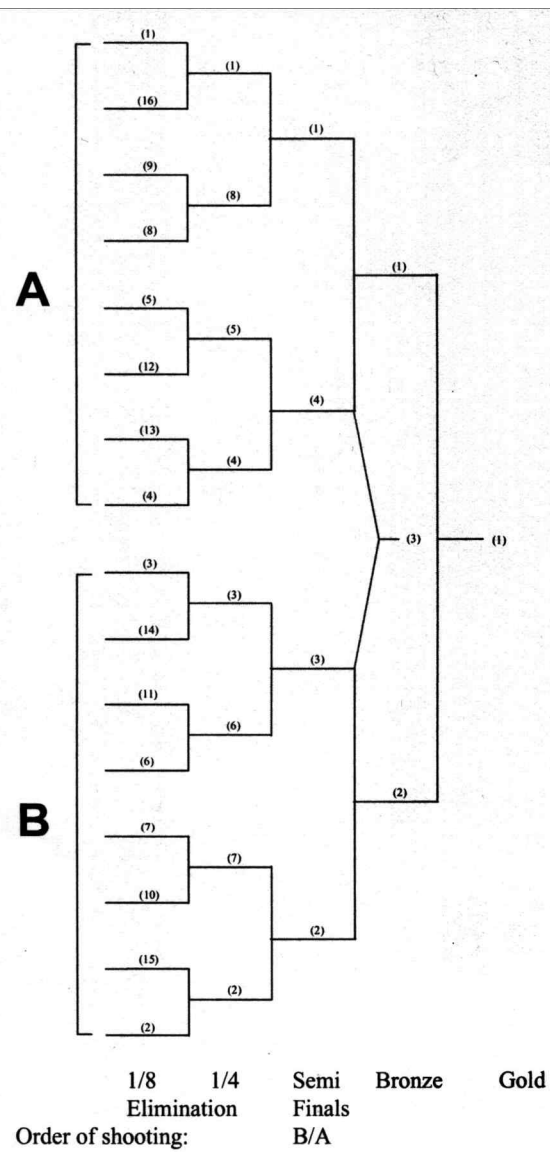
부록 1-1 대진표 (64명, 부전승 허락됨)



부록 1-2 대진표 (32명, 부전승 허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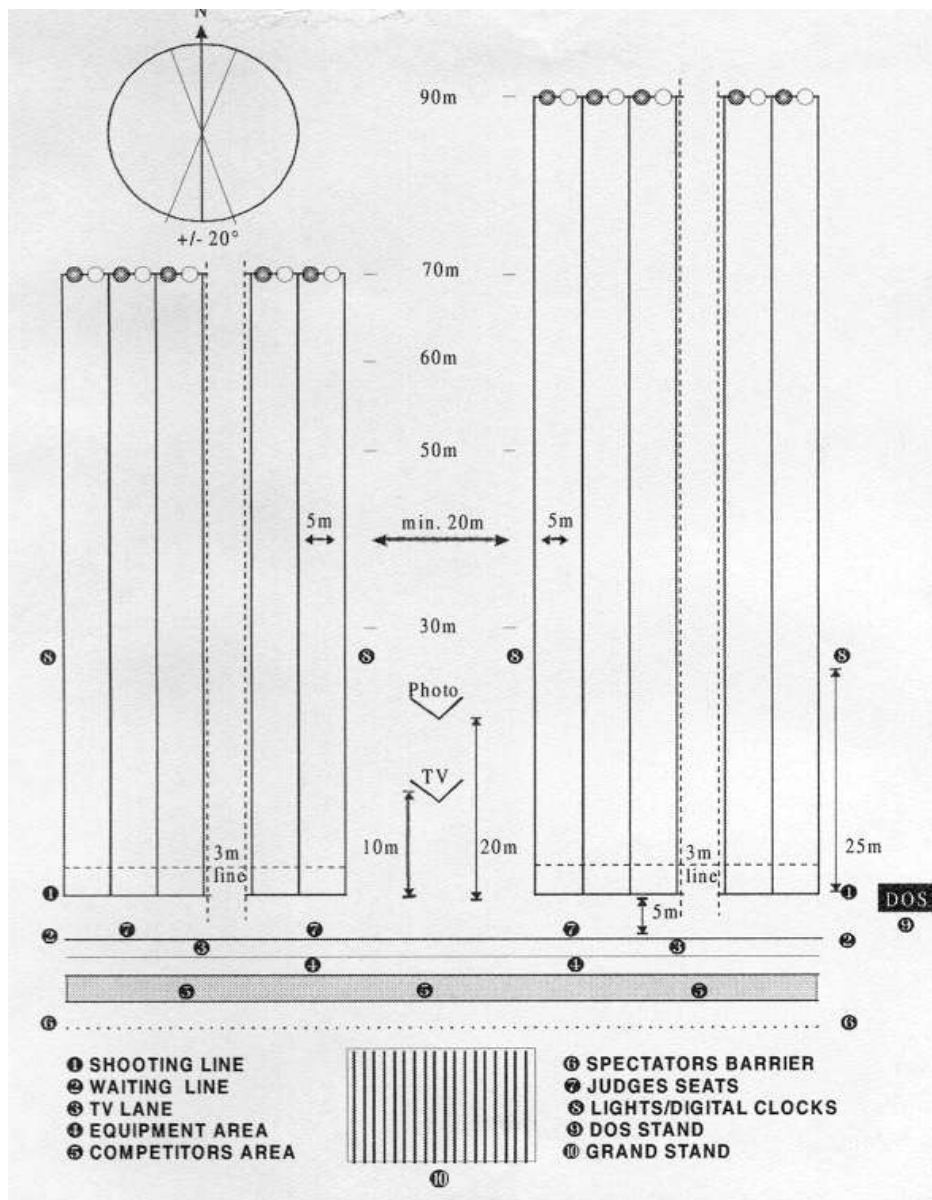


부록 1-3 대진표 (16명, 부전승 허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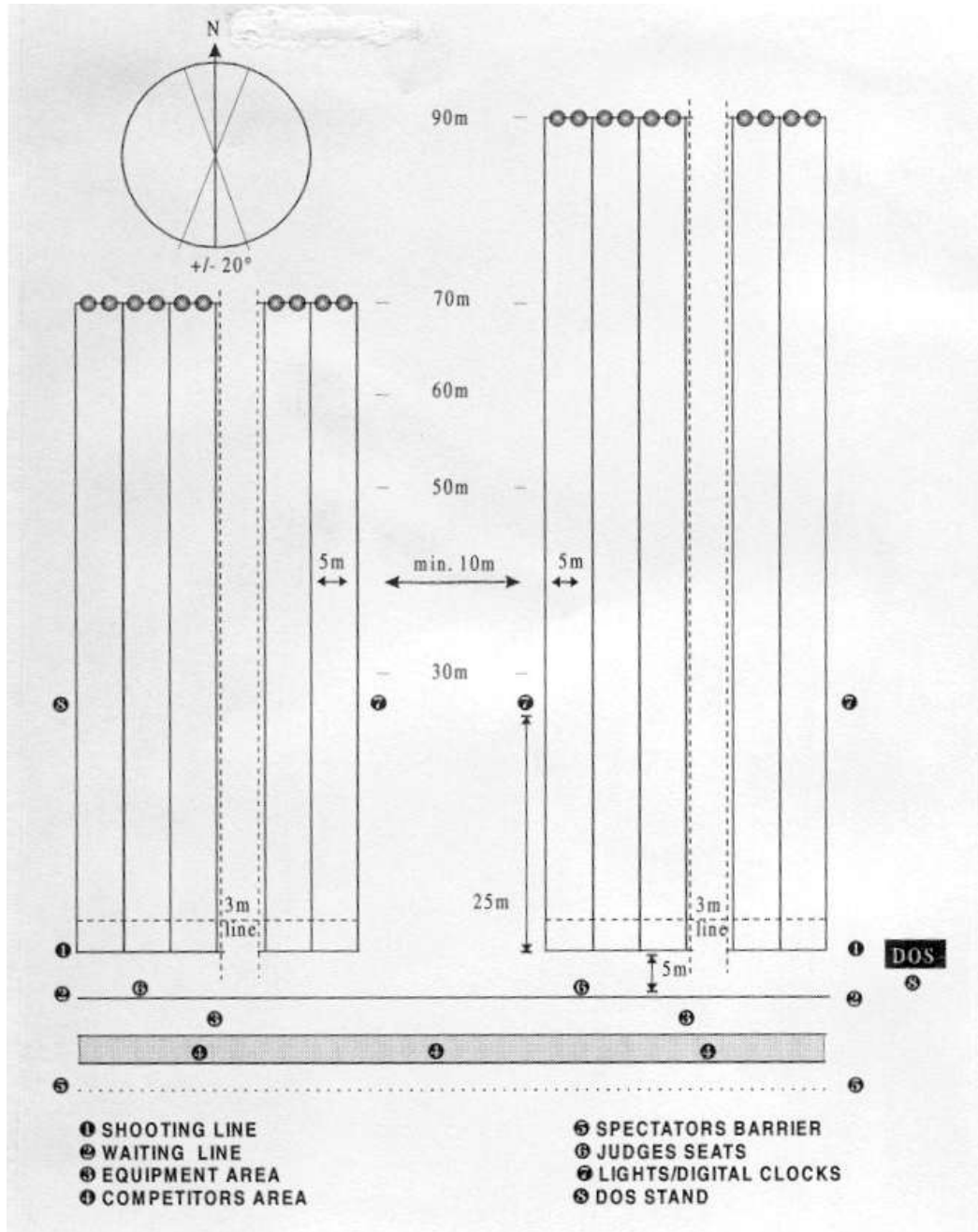


부록 2 경기장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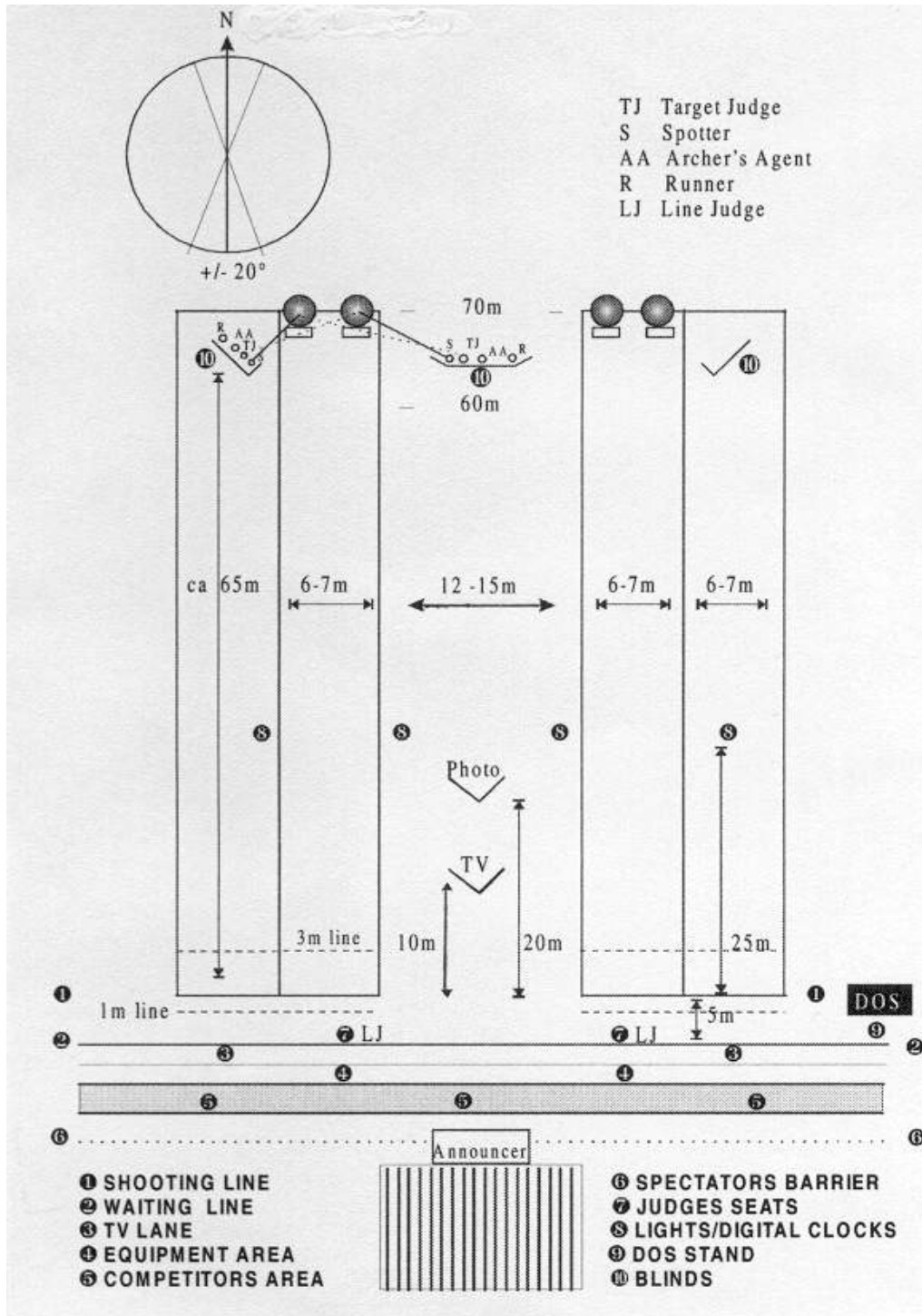
부록 2-1 경기장 배치(주요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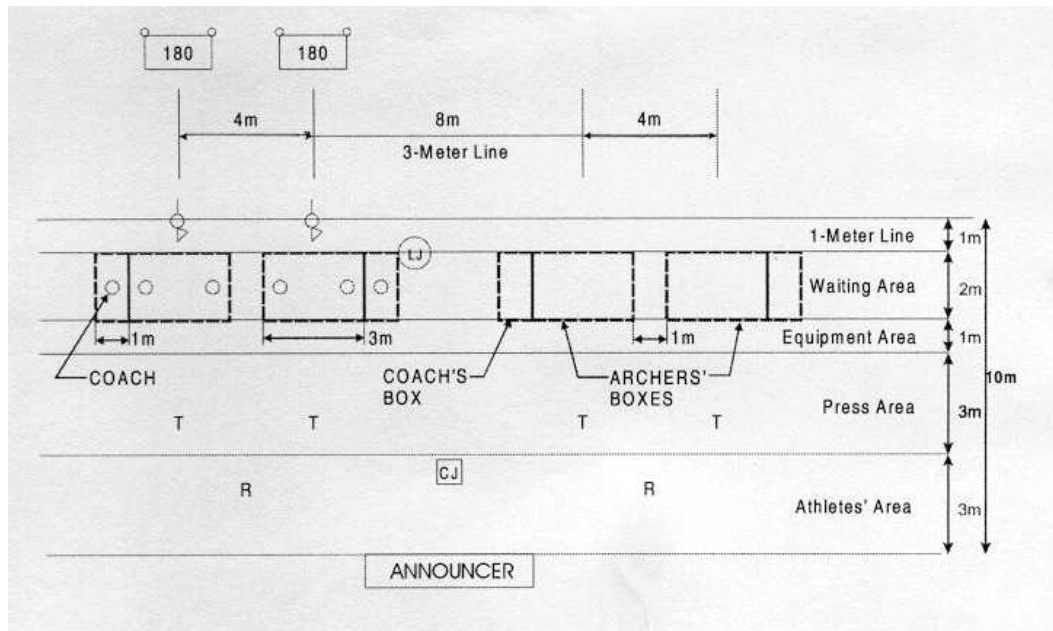
부록 2-2 경기장 배치(기타대회)



부록 2-3 경기장 배치(올림픽라운드 파이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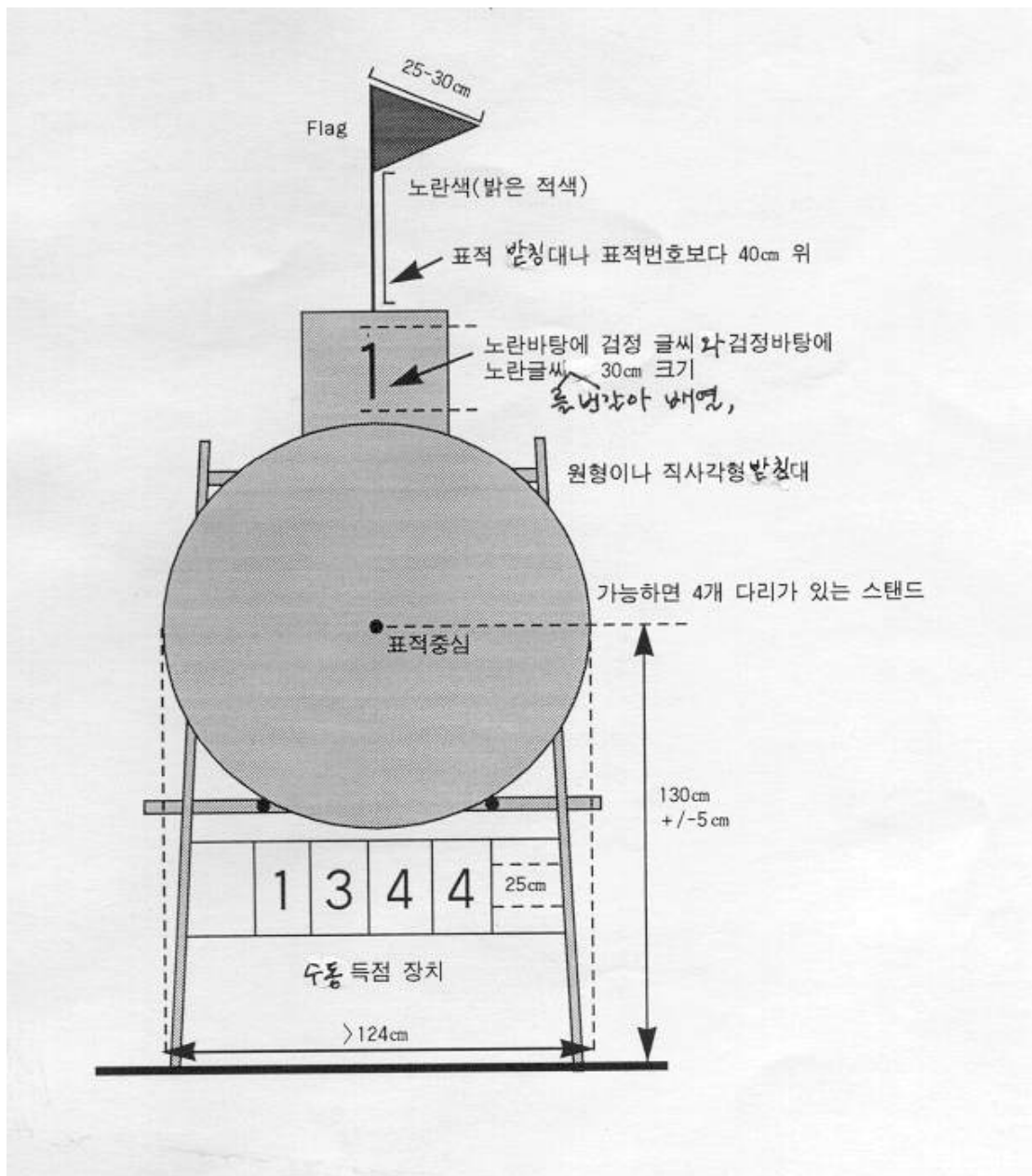


부록 2-4 경기장 배치(올림픽라운드 단체전 파이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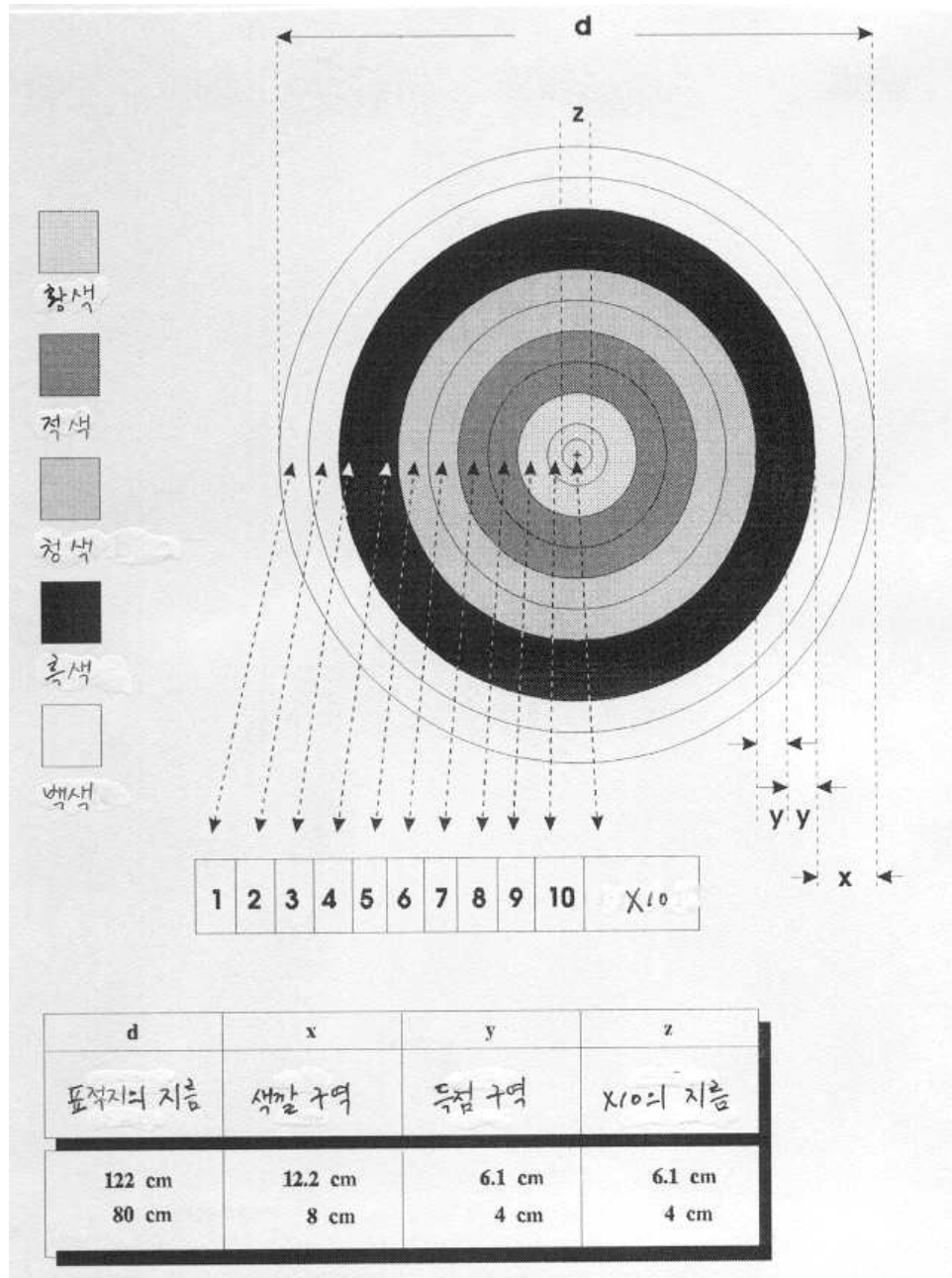


부록 3 경기장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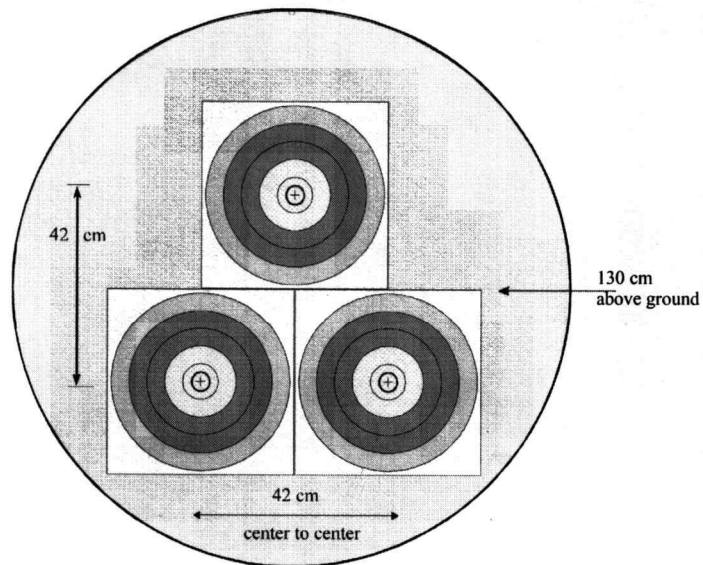
부록 3-1 표적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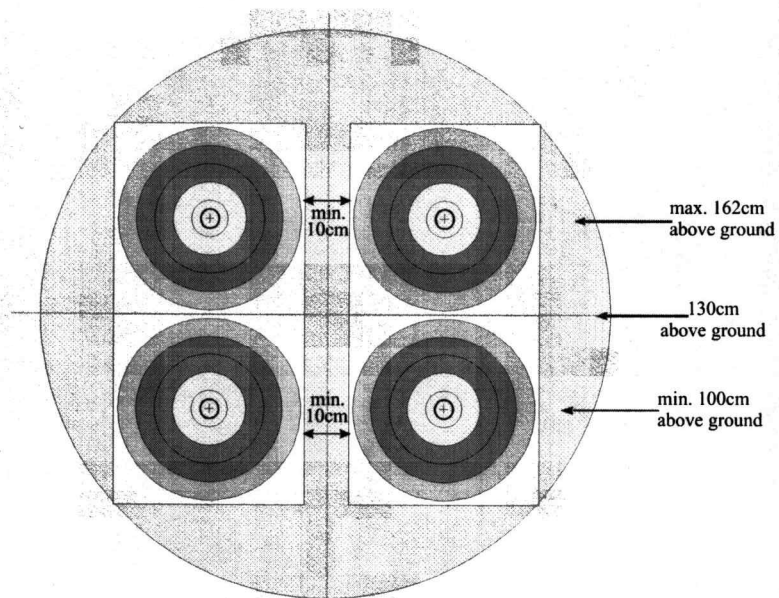
부록 3-2 실외 표적지



부록 3-3 실외 표적지(복수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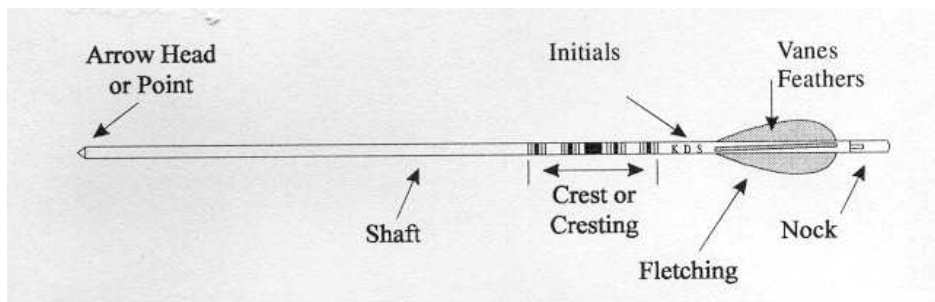
80cm-center symmetrical triangular set-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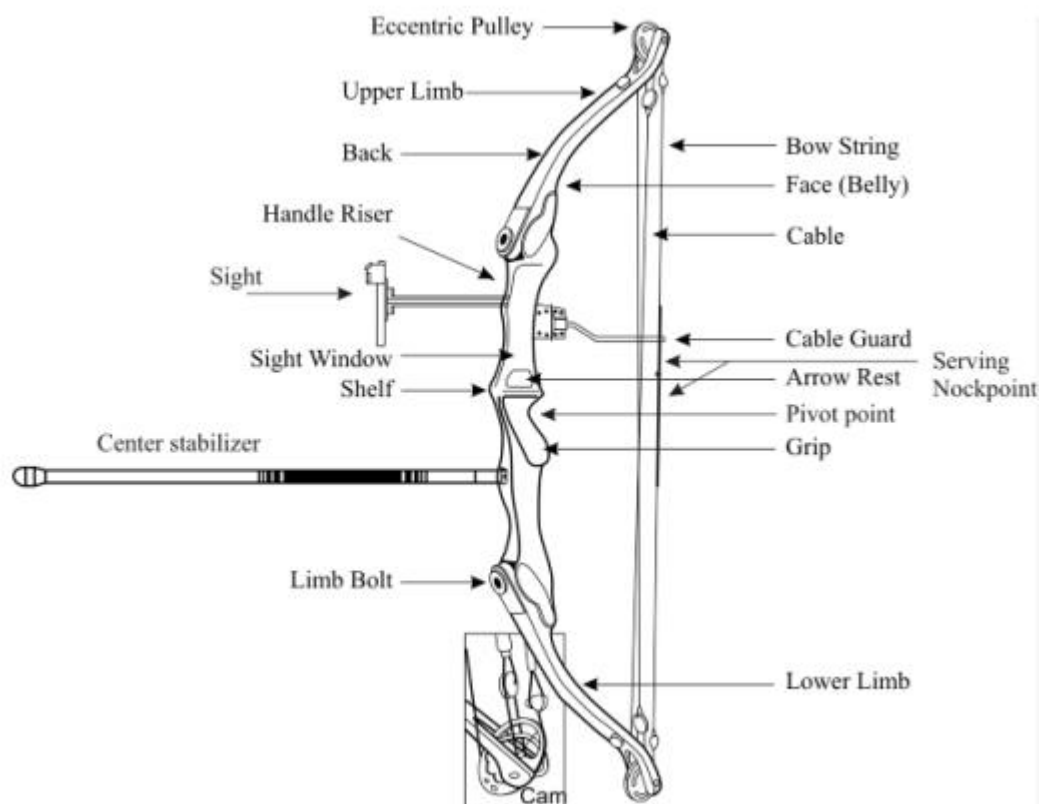
80cm-center four-center set-up

부록 4 선수장비

부록 4-1 화살



부록 4-2 컴파운드 활



부록 4-3 리커브 활

